

2014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 재승인 백서

2014. 7.

목 차

I.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주요경과	1
II.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5
1.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관련 1차 토론회 발제문('13.8.5)	7
2.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관련 2차 토론회 발제문('13.9.2)	61
3.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안건) - 방통위 의결보류('13.9.4)	99
4.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속기록) - 방통위 의결보류('13.9.4)	127
5.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안건) - 방통위 수정의결('13.9.5)	143
6.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속기록) - 방통위 수정의결('13.9.5)	169
III. 재승인 신청 안내	183
1. 2014년도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 신청 안내	185
IV. 시청자 의견 청취	325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327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331
V.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347
1. '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안건, '13.7.9)	349
2. '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속기록, '13.7.9)	363
3.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안건, '14.2.28)	375
4.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속기록, '14.2.28)	387

VI. 재승인 심사 395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397
2. 심사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401
3. 세부 심사기준 411
4. 심사평가 결과 437
5. 심사의견서 449
6.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485
 - 1) 제1차 회의 487
 - 2) 제2차 회의 517
 - 3) 제3차 회의 613
 - 4) 제4차 회의 619
 - 5) 사업자 의견청취 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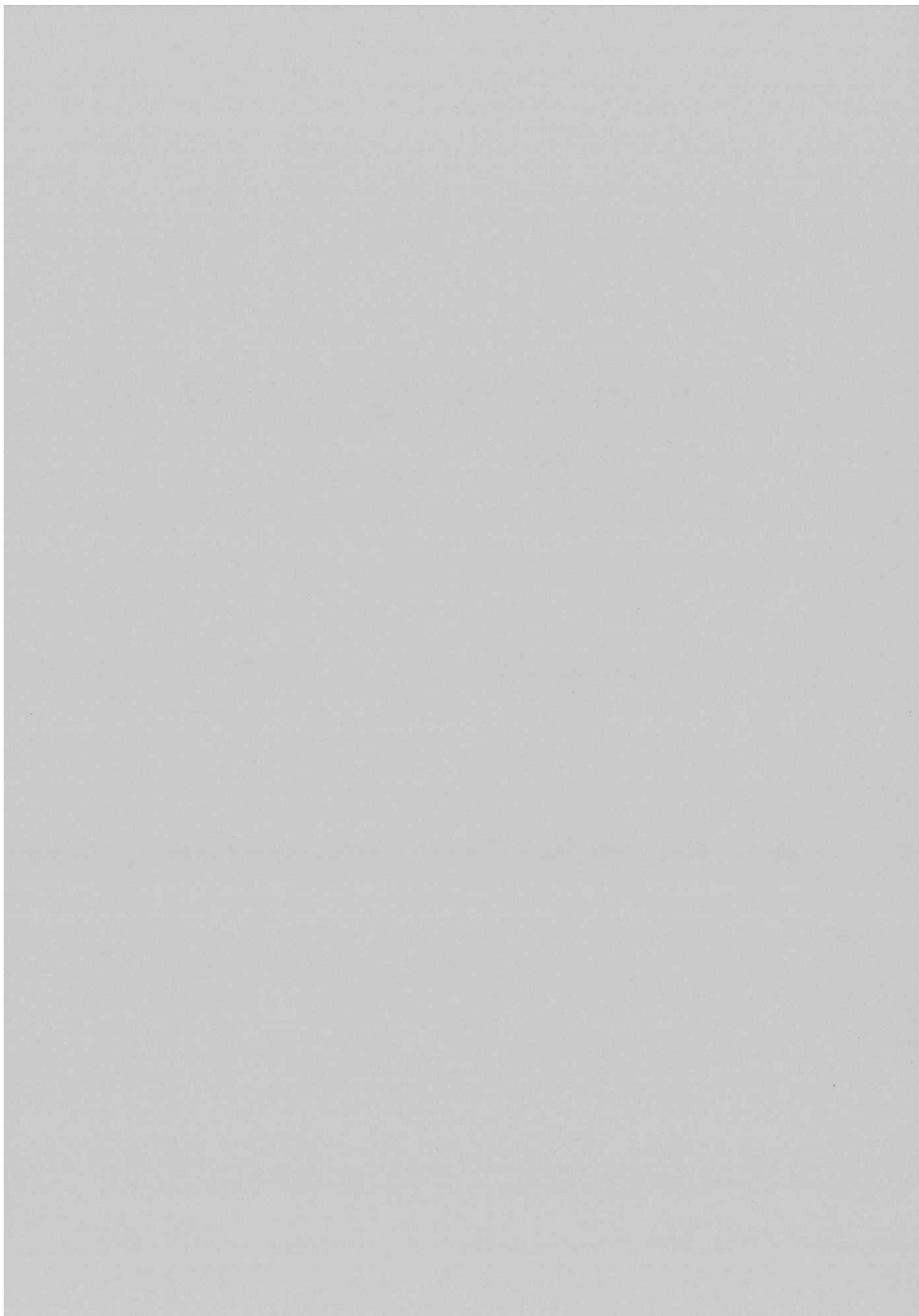
VII. 재승인 의결 743

1.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의결(안건) - 의결보류('14.3.17) 745
2.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의결(속기록) - 의결보류('14.3.17) 765
3.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의결(안건) - 수정의결('14.3.19) 777
4.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의결(속기록) - 수정의결('14.3.19) 797

VIII.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청취 반영여부 공표 831

1.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공고문)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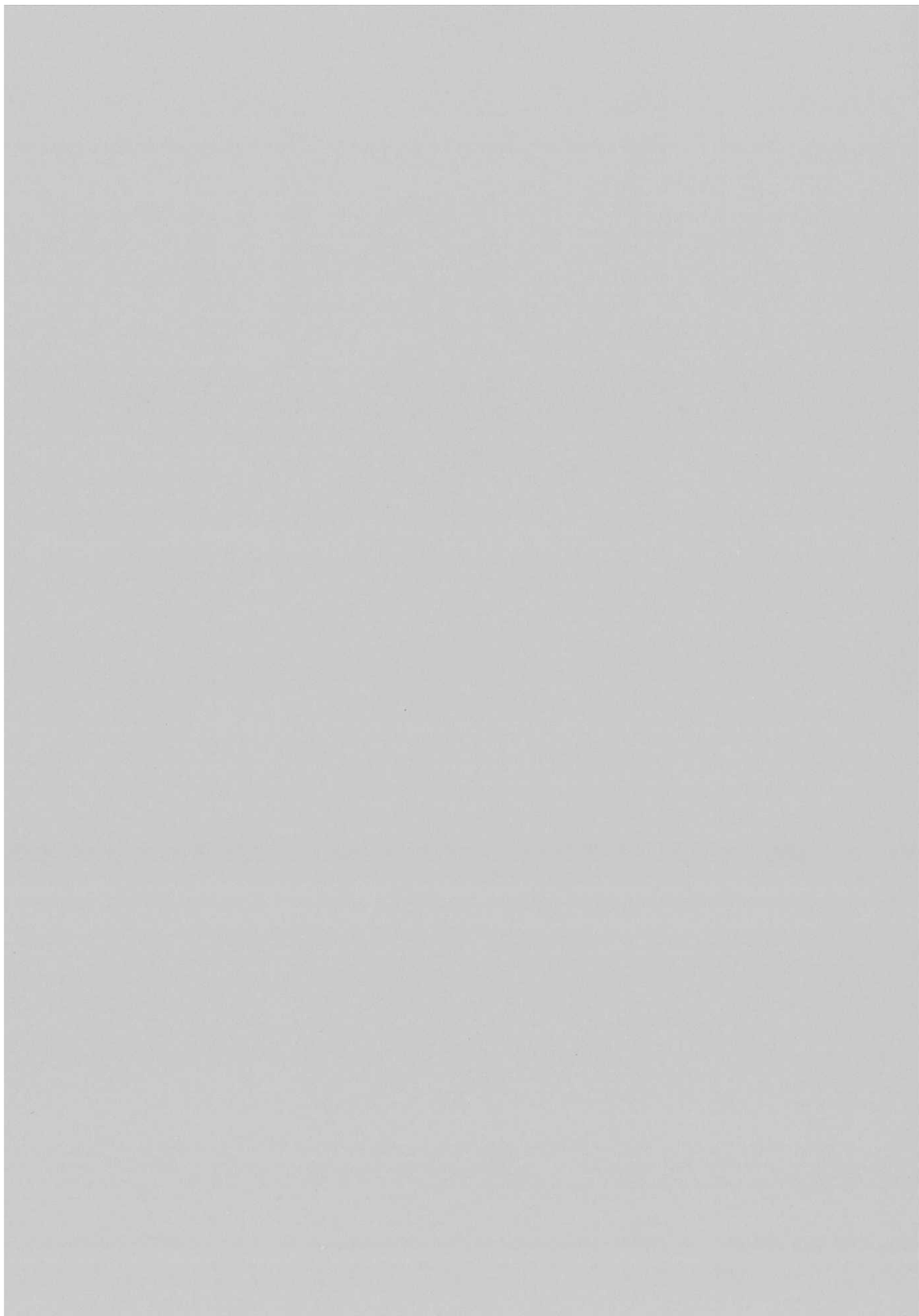
**I . 2014년도 종합편성 · 보도전문 PP
재승인 주요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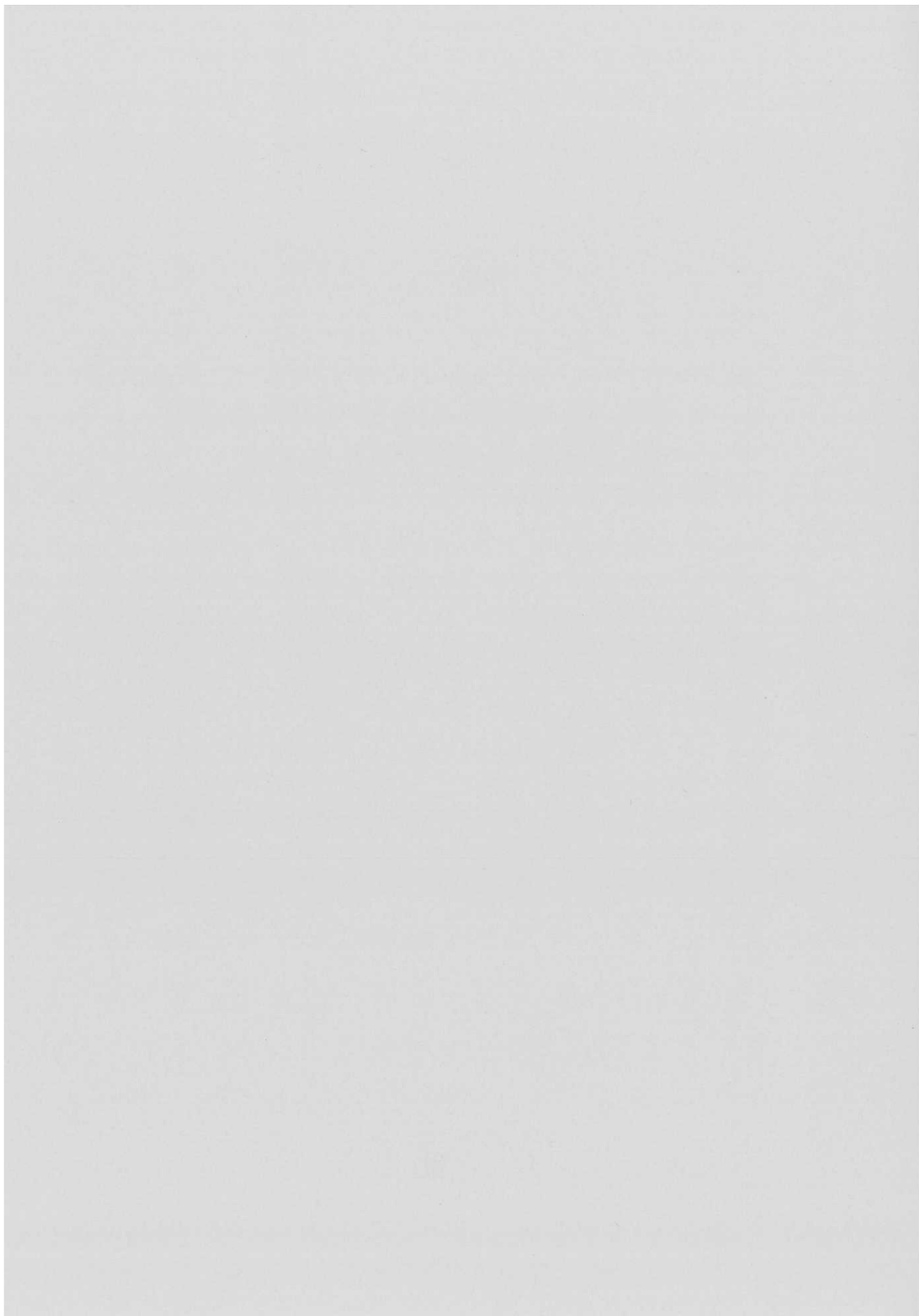
주요 경과사항

- '10.12.31 종편 및 보도PP 승인 대상법인 선정(종편 4개사, 보도 1개사)
- '11.3.31 종편 및 보도PP 승인장 교부(TV조선, JTBC, 뉴스Y)
- '11.4.21 종편PP 승인장 교부(채널A)
- '11.12.1 종편PP 승인장 교부(MBN)
- '13.7.9 '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위원회 보고
- '13.7~8월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 운영
- '13.8.5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1차 토론회 개최
- '13.8.23 종편 및 보도PP 5개사에 시정명령* 부과
* 사업계획서 상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준수 등
- '13.9.2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2차 토론회 개최
- '13.9.5 '14년도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 '13.9.9 재승인 신청법인 대상 설명회 개최
- '13.9~10월 재승인 신청서 접수(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 '13.11.29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12.30까지)
- '14.1.29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종편PP 4사에 과징금* 처분
* 사업자별 각 3,750만원 부과
- '14.2.28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위원회 보고
- '14.3.10~14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 '14.3.19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의결

Ⅱ. 2014년도 종합편성 · 보도전문 PP 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1.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관련
1차 토론회 발제문(2013. 8. 5.)**



중편 보도 채널 재능의 심사안
토론회

2013년 8월5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도준호

목차

- I. 중편 채널의 도입 경과
- II. 중편 채널 승인과 정책적 이슈
- III. 중편 채널의 성과
- IV. 재승인 심사안 구성안
- V. 재승인 심사 항목

I. 종편 채널의 도입 경과

종합편성 채널 도입 경과 사항

- 2001년 개정 방송법 이후 8년간 승인이 없었음
 - 종편채널이 생존할 수 있는 유료방송 시장 규모가 성숙되지 않음
 - 구방송위원회의 전문채널 중심의 채널 정책
- 2005년 MBC 계열사들이 지역방송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방송 네트워크가 공동 참여하는 종편 PP 도입을 제안하며 최초로 구체적인 종편 도입 논의 개시
- 2006-2007년에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외주제작형 방송채널로서 종편 도입 추진(Open TV)
- 2007년 대선 선거 과정과 인수위에서 종편 도입의 MB 정부의 핵심적 미디어 정책으로 언론서 보도
- 2008년 대기업과 신문사의 보도채널, 종편, 지상파방송 진입 허용을 놓고 미디어법 논의 시작
 - 신문사들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사업 다각화 노력
- “2009년 5월 ‘서비스 선진화 방안’ 대통령 보고서 종편 도입 권고

종편 채널의 도입 경과

- 2009년 7월 논란 끝에 미디어법 개정으로 방송매체에 대한 소유와 경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대기업과 일간신문의 방송사업 진출 가능성이 열림(일간신문이 30% 이내에서 종편의 지분 소유 가능)
-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 18호)

종합편성 채널 승인 과정

- 2010. 9.17 종편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 계획 발표(방통위)
(사업자 선정방식, 심사기준 및 배정, 납입 자본금 제시)
- 2010 11.10 종편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방통위)
- 2010 11.30-12.1 사업 계획서 접수
- 2010 12.31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경 콘소시엄 등 4개 사업자와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연합뉴스TV선정 발표.

종편 승인 기본 계획 2010. 9.17

-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채택
 - 별도의 사업자 구분 없이 선정
- 심사기준 및 배점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각각 25%,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각각 20%, 방송 발전을 위한 연구 계획 10%
 - 전체 총점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의 70%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 미달시 탈락
- 납입자본금
 - 최소한 납입자본금 3000억원이며 일정 수준까지 자본금 규모가 커질 수록 가점을 받으며 5000억원이 최고 점수.
-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 중복소유
 - 방송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정한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중복 소유할 수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

종편 보도 전문 채널 사용 사업자 최초 승인시 심사 기준

심사항목	종편	보도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50점	300점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0점	200점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00점	250점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00점	150점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100점	100점
합계	1000점	1000점

II. 중편 채널 승인과 정책적 이슈

종편 도입 정책목표

- 방통위 기본계획에서 정한 종편 도입 정책목표(2010. 11)
 - ✓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 ✓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 ✓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종편 관련 비대칭 규제 이슈 |

• 의무 재송신 규정

- ✓ KBS1TV와 EBS만이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상파 방송 보다 공익성이 크기 어려운 종편의 의무 재송신 형평성 문제 야기
- ✓ 4개의 종편 의무재송신으로 개별 PP는 송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됨

구분		의무재송신 수	비고
의무 방송 채널	지상파	공영 2개	KBS1, EBS
	PP	공공 3개	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
		종교 3개	불교TV, 기독교TV, CBS, 평화방송 중 택 3
		보도 2개	YTN, 뉴스Y
		공익 3개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등 총 3개 분야 3개 이내 선정 후 각 분야 별 1개 이상 의무진송
	SO지역채널	중편 4개	JTBC, 채널A, MBN, TV조선
		1개	지역방송
		18개	-
	준의무 방송 채널	공영 2개	KBS2 MBC
		민영 1개	SBS(민영)
	PP	총소핑 6개	GS, CJ, 현대, 롯데, 농수산물요원, 출연요원
소계		9개	-

종편 관련 비대칭 규제 이슈

- Low 채널 번호 배정 및 8vsb 전송방식 이슈
 - ✓ 채널 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SO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위험 소지가 있음
 - ✓ 종편사들은 HD 제작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상파에 적용되는 8vsb 전송 방식 요구
- 광고판매 차별
 - ✓ 공익성을 강조하는 지상파 방송은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종편 사업자는 중간광고가 가능한 상황
 - ✓ 종편 광고 판매가 미디어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종편과 광고주의 적거래로 인한 불공정한 광고 영업 가능성
- 프로그램 편성 비율
 - ✓ 국내제작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60-80%인데 비하여 종편 사업자는 20-50%로 규정
 - ✓ 핵심 시간대에 경쟁력 있는 국내 제작물을 편성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해외 제작물 편성이 용이함

종편 관련 비대칭 규제 이슈 III

- 서비스 권역의 비대칭성과 지역성 결여
 - ✓ 지상파방송의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지역별 방송 권역을 유지하며 지역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지나 종편은 전국 방송이 가능함
 - ✓ 종편에서는 수도권에 집중화된 보도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성 구현을 통한 공익성 실현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음
- 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이슈
 - ✓ 종합편성 채널은 의무송출 대상임에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하려는 상황
-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의 6/100 범위안에서 방송발전기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KBS와 EBS는 MBC의 2/3 부담하게 되어 있음(MBC,SBS:4.75% KBS,EBS:3.17%)
 - ✓ 지상파와 유사한 편성으로 경쟁하게 되는 종편에게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의무를 면제



III. 증편채널의 운영 성과

콘텐츠 투자 저조

- 방송개시 초반에 대작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저조한 시청률을 보이면서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콘텐츠 투자계획 (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 (출처:방통위)

구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계
'12년 계획	1,575억	2,196억	1,804억	1,660억	50억	7,285억
이행 실적	604억	1,129억	985억	711억	24억	3,453억(47.4%)

□ 재방송 비율(출처:방통위)

구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12년 계획	26.8%	5.6%	23.6%	32.9%	11.61%
이행 실적	56.2%	58.99%	56.1%	40%	7.04%

방송의 다양성 확보 미흡

- 작년 대선 과정에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상승하면서 이후에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라는 당초 정책 목표 달성에 미흡함

□ 방송분야별 편성 비율 (출처:방통위)

구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사업계획서	24.8	36.2	39.0	23.7	44.8	31.5	23.6	42.5	33.9	22.7	35.9	41.4
이행실적	35.9	33.5	30.6	20.2	38.2	41.6	34.1	33.4	32.5	51.5	27.2	21.3

편중된 방송 편성 실태

□ 2012년 종편4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출처: 방송위)

방송사		6월		
		전체	보도	교양
JTBC	주시청	100	19.3	38.0
		100	(주)25.7	(주)49.0
		100	33.4	33.3
		100	(주)33.6	(주)37.8
채널A	주시청	100	30.5	38.4
		100	(주)23.3	(주)38.0
		100	53.7	24.2
		100	(주)23.9	(주)46.2
12월				
JTBC	주시청	100	27.4	25.6
		100	(주)51.1	(주)12.6
		100	52.9	35.5
		100	(주)62.1	(주)28.1
채널A	주시청	100	60.6	22.2
		100	(주)61.5	(주)19.1
		100	64.7	22.9
		100	(주)67.6	(주)19.9

미미한 단기 시장 성과

-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방송 분야에서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문사 방식의 경영 체제가 지속되는 점은 문제점으로 부각됨
- 시장 성과 평가는 사업계획서에서 대부분 사업자들이 최대 2개 정도 종편사 승인을 상정했기 때문에 4개가 허가된 방송시장 현실과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12년도 매출액, 영업손익(출처: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구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매출액('12년)	513억원	642억원	480억원	628억원
영업손익('12년)	-543억원	-1,397억원	-738억원	-419억원

□ 종편 보도 PP 시청률 (출처:방송위)

구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시청률	'12년평균	0.502%	0.603%	0.638%	0.742%	0.387%
	'13년상반기	0.931%	0.955%	1.030%	1.171%	0.448%

IV. 재승인 심사안 구성 방안

심사안 구성을 위한 연구반

- 연구반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해당분야 경력, 전 공 분야 등)
총괄책임자	숙명여대	교수	노준호	방수정 정책
	동국대	교수	강재원	방수정 정책 방수정 경영
	숙명여대	교수	강형철	방수정 정책
	상지대	교수	김경환	방수정 정책
	국민대	교수	김도연	방수정 정책
	전남대	교수	주정민	방수정 정책
	KISDI	책임연구원	황준호	방수정 정책

- 방수정 정책 및 방수정경영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재능인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리적인 심사안 도출 위하여 노력 중이며 이후 제시된 견해는 연구반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한 것임

심사안 구성시 고려 사항 |

- 재능인 기준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미래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함
 - ✓ 실권 성과와 계획을 같이 평가할 경우 '실제' 성과의 결과가 '보증하기 어려운' 계획에 의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 항목과 계획 항목은 구별되어 평가되어야 하겠음
- 승인 조건 이행 실적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차후 재능인 시의 계획에 대한 실천성을 담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 이는 계획에 대한 점수 비중은 낮게 이행 실적에 대한 점수 비중은 높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종합편성채널의 채널 분류를 고려, 기실시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사안 구성시 고려 사항 Ⅱ

- 종합편성채널 승인의 목표 성취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음
- 종합편성채널 방송 이후 드러난 사회적 문제 제기를 고려하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임: 방송 경쟁성 및 품격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반영되어야 함
- 심사항목이 많아지면 종합점수화 하였을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종점 심사 요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어 결국 문제는 드러났으나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딜레마를 해결하여야 함

재승인 관련 사회적으로 제기된 이슈들 |

- ❖ 제316회 국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내용 정리
- 2010년 승인 당시의 승인심사기준 반영
 - ✓ 승인 당시의 4가지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
 - ✓ 재승인시 4가지 기준에 근거해야
 -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 방통심의위원회의 실태조사 반영
 - ✓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심의결과, 제재결과 등을 심사에 반영
 - ex) 종편의 역사 왜곡 보도 -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북한과의 관련성 보도
 - ex)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국정원의 여직원 인권유린이라 보도
 - ✓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지켜져야
 - ✓ 방송의 품격 어느 정도 지켜져야

재승인 관련 사회적으로 제기된 이슈들 II

❖ 제316회 국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내용 정리

• 방송평가 반영

- ✓ 지상파는 재허가시 방송평가 비중이 40%임
- ✓ 종편 또한 동일한 비중으로 방송 평가를 재승인시 반영
- ✓ 같은 방송법의 기준에 준하면 평가기준의 배점평가는 같아야 함
- ✓ 배점기준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 편성실태 반영

-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 문제 (새벽 5~6시)
- ✓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 문제 (새벽 3시~5시)
- ✓ 재방비율, 삼방비율 계속해서 증가 (재방비율 60%)
- ✓ 승인당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하지 않음
- ✓ 방송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있음으로 재승인 심사 때 반드시 평가하고 반영

재승인 관련 사회적으로 제기된 이슈들 III

❖ 이석기 위원실 주최 토론회 내용

- ❖ 재승인 심사기준 최우선 3대 과제 (이석기 의원 발표)
- ❖ ① 이행실적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 ❖ ② 재정능력 (시청률지상주의, 막장방송 방지)
- ❖ ③ 심의규정 위반하는 경우 패널티
- ❖ 계량평가 강화 : 비계량평가(1000점 중 725점)의 비중이 컸던 승인 심사와 달리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평가로 심사기준을 마련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방송법 근거 조항 I

• 제10조(심사기준·절차) 1항

-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방송법 근거 조항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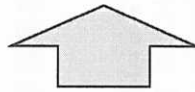
• 제17조(재허가 등) 3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항목표

2012년(2012년말 허가기간만료 사업자)			
심사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가지표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계량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150	비계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50	비계량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	비계량	
5. 경영 적정성	50	비계량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	비계량	
7.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50	비계량	
8. 시청자의 권익 보호	75	비계량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0	계량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계	1000점		



2013년(2013년말 허가기간만료 사업자)			
심사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가지표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계량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150	비계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75	비계량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	비계량	
5. 경영의 적정성	50	비계량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	비계량	
7.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50	비계량	
8. 시청자의 권익 보호	85	비계량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	계량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계	1,000점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종편 보도 채널 제승인 심사 대항목 및 평가지표

심사항목	평가지표	비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계량 (2012년 평가)	방송법 제17조 제3항
2.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및 제17조 제3항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계량/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및 제17조 제3항
8. 승인시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비계량	방송법 제17조 제3항
9.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계량(감점)	방송법 제17조 제3항

심사항목 이슈 및 차별화 요소!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제기된 이슈	✓ 방송의 공정성 및 품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 정책 목표였던 다양성과 관련된 공정성 확보 방안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는 사안임
차별점	✓ 종편은 자유재가 아니라 국가가 허가하는 언론사업이므로 주관적 시각을 지닌 다양한 채널들의 경합을 통해 전체적인 공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정책 방식은 적절치 않음 ✓ 승인 사업인 종편은 자체적으로 내적 공정성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제기된 이슈	✓ 종편 출범 당시 정책 목표인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의 확대”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은 종편이 여타 채널과 차별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하고 제작함으로써 가능 ✓ 또한 종편 출범 후 애초에 기대한 콘텐츠 시장에서의 새로운 제작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종편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점검
차별점	✓ 본 영역의 평가요소에 있어서 종편의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대비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함 ✓ 본 영역은 종편의 초기 운영의 핵심적 실적에 대한 평가이므로 해당 영역 배점을 여타 플랫폼 및 지상파 등의 재하가 심사시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총 배점에서 방송평가위원회 평가결과(400점)과 하가시 부여된 조건 등의 이행여부 등을 제외한 점수의 1/4정도로 한이 적절할 듯(100점 ~ 125점)

심사항목 이슈 및 차별화 요소 ||

•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제기된 이슈	✓ 사회적 기여 실적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 이행실적과 관련해서 심사항목 평가시 기존의 모회사인 신문사 소속인력이 종편으로 이동한 숫자는 신규일자리 창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 지역적 기여와 관련해서는 전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편의 지역사회 기여실적이 필요한가라는 논란이 사업자로부터 제기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시민단체 등에서는 종편사업자는 전국적 서비스 사업자이므로 일정정도 지역콘텐츠 유통 및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한 실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차별점	✓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의 경우 타방송사업자와 재허가시 차별화되는 요소는 없으나 지역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앞에 기술한 것처럼 전국권역의 서비스 채널인 종편채널에 이러한 심사항목을 넣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반대로 꼭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적 필요성과 타당성 항목의 심사항목 포함여부는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심사항목에 지역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이를 참고하여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 판단

심사항목 이슈 및 차별화 요소 III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제기된 이슈	✓ 종편 도입의 정책목표 중 “콘텐츠 시장 활성화,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구조” 및 “경쟁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종합편성채널의 경영계획과 중요한 관련성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계획”,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 “제작비 등 경상이영자금 산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도 및 계획을 심사할 수 있을 것 ✓ 종편 재심사에 대한 논의가 공정성과 같은 이슈에 매몰, 정책 목표에 따라 종편 재심사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산업적 관점과 공익적 관점의 균형된 관점 설정이 필요
차별점	✓ 지금까지 국내에서 허가, 승인사업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업적 관심이 공익적 관점보다 큰 방송사업자 허가나 승인 자체가 종편 이외에는 전무 ✓ dmb, iptv 등 신규 유료방송 플랫폼의 경우 방송산업의 경쟁 활성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나 콘텐츠 분야(채널 사업)에서는 언제나 공익적인 이슈가 우세 ✓ 따라서, 이번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과 세부 심사기준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

심사항목 이슈 및 차별화 요소 IV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제기된 이슈	✓ 신규 콘텐츠의 제작에 투입하는 투자금은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요 요소로 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구성관련한 정지적 이슈로는 실제 주요주주가 사실상 포함되지 않아 주요주주로서의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비상정사 주주 비중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요주주의 재정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신용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차별점	✓ 종편이기 때문에 타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차별화 되는 요소를 본 심사항목에서는 찾기 힘들 ✓ 다만, 재정과 기술적 능력 전반에 대한 비중을 다소 낮추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이는 초기 사업자 상황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보아할 심사항목일 가능성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제기된 이슈	✓ 유료방송 순수권 구조 확립은 종편 도입의 주요 정책 목표임 ✓ 종편은 기존의 유료방송 콘텐츠와 차별화 되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여 유료방송 시청자의 지불의사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탄생했음 ✓ 하지만 초반 성과 부실에 따른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을 실현하지 못하고 제작비 절감을 위하여 보도 프로그램 비중이 증가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수신료 징수 이슈 역시 의무재송신 제도와 맞물려 논란임
차별점	✓ 방송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여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다른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비하여 보다 비중을 두고 평가 이루어져야 함 ✓ 다만 방송사업 특성상 단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심사항목 이슈 및 차별화 요소 V

• 승인조건 이행 여부	
제기된 이슈	✓ 승인조건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존재함. 특히 야당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승인조건에 준수여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에 승인조건에의 경우 단순히 재승인을 평가하는 하나의 항목이기 보다는 재승인의 결정사유로 보는 시각도 존재함. 즉 재승인시 최초 승인시 제시한 승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승인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차별점	✓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승인조건은 9가지 항목으로 다른 사업자에 비해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방송서비스를 시작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 경영 등 세부적인 여러 항목을 승인조건에 적시하고 있음. ✓ 승인조건에 종합편성채널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사업계획서의 이행 실적 및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V. 재승인 심사 항목

2. 방송의 공적 책임 · 공공성 ·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2-1-1.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적책임 수행 실적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수행 실적	비계량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과 연계하여 평가
	2-1-2. 방송의 공정성 구현	•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다양성 이행 실적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이행 실적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 '공정성' 관련 법률 위반 사례 (감점)	비계량	○ 뉴스내용의 객관성 유지 및 보편적 가치 지향, 뉴스 원 다원화 등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 ○ 방송법 제69조의2항에 따라 선정된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및 일간신문 구독률(시청점유율로 환산)을 대상으로 선정
	2-1-3.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구현	•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 캠페인 포함) 편성 실적 • 재난방송 편성 실적 • 방송언어 순화 실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 '공익성' 관련 법률 위반 사례 (감점)	비계량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과 연계하여 평가

2. 방송의 공적 책임 · 공공성 ·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2. 신행법인의 적정성	2-2-1. 신행법인 및 주요 주주의 건전성	• 신행법인(대표자, 편성책임자 포함) 및 주주주주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비계량	○ 관계 기관 의견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행법인 및 주요주주의 관련(방송, 통신, 신문, 商事, 금융, 조세, 노무, 공정거래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사안의 경중, 빈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대상기간은 최근 2년으로 함 ※ 관계 기관 의견 조회는 확정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함

2. 방송의 공적 책임 · 공공성 ·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3.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2-3-1. 소수 시청자 그를 지원	▪ 시청자 권익실현 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비계량	○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의 충분성을 평가 ○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으로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
		▪ 장애인 지원방안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편성의 충분성을 평가 ○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시청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방안 등을 평가
		▪ 노약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전체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과 연계하여 평가
	2-3-2. 시청자 참여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보장방안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비계량	
		▪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위원회 구성방안, 회의 개최 주기, 위원회 결정사항의 처리 계획 등을 평가
	2-4-3. 시청자 불만 처리	▪ 자체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 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비계량	○ 자체심의기구 설치, 운영계획, 자체심의 절차의 효율성 등을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의 신속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평가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1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 성의 적 절성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우 수성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의 적절성	비계량	○ 편성계획의 방송법령 부합여부, 방송분야별·장르별 방송프로그램 구 성의 다양성, 재방송 비율, HD프로그램 편성계획, 방송광고 운용계획, 주간편성기초표 등을 평가 ○ 연도별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장르, 방송내용, 제작원, 장르, 시 청대상, 연간 편성편수 및 시간, 편당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 등을 평가
		▪ 방송분야별, 장르별 편성 계 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독 창성	▪ 기획·편성의 독창성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의 참신성	비계량	
		▪ 기존 종합편성(보도)방송과 의 구체적 차별성		
	3-1-3.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 편성의 독립성 및 자율성	비계량	○ 편성규약(방송법 제4조제4항) 등을 평가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2 방송프로그램 수급의 적절성	3-2-1. 방송프로그램 자 체제작의 적절성	▪ 방송프로그램 수급의 적절성	비계량	○ 국내물과 국외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의 이행 실적 및 향후계획		
		▪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의 이행실 적 및 향후계획		○ 자체제작 계획의 전체 편성계획, 소요비용 및 제작 인력 등 경영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3-2-2. 방송프로그램 외 주제작의 적절성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비계량	○ 외주제작 계획의 전체 편성계획, 소요비용 등 경영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3-2-1. 방송프로 그램 구매의 적절 성	▪ 국내의 방송프로그램 구매의 이 행실적 및 향후계획	비계량	○ 국내의 방송프로그램 구매계획의 전체 편성계획, 소요비용 등 경영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3 방송 프로그램 제작협력의 적절성	3-3-1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의 적절성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비계량	○ 외주제작사, 지역방송국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및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프로그램 공동제작 (제작지원), 콘텐츠 공동 활용 등의 협력계획을 평가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3-3-2. 전략적 협력의 우수성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비계량	○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을 평가
		▪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 및 향후 계획		
	3-3-3.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	▪ 국내외 콘텐츠 유통의 실적 및 향후계획	비계량	○ 해외진출 전략, 국내외 콘텐츠 판권 판매계획 등을 평가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을 통한 방송산업 선순환 및 글로벌 경쟁력 기여 실적 및 향후계획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4-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4-1-1.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신정법인의 사회적 기여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신정법인의 향후 ○년 간의 사회적 기여방안 및 실현 계획 평가 ○ 신정법인의 공익 및 자선 사업등 사회적 기여실적 ○ 캠페인, 행사, 기부 등 공익 및 자선 사업 등의 참여 실적 평가
		·신정법인의 일자리 창출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비계량
			신규일자리 창출 실적의 평가
	4-1-2.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신정법인의 지역적 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이행 실적의 평가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향후 ○년 간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평가
			비계량
	4-1-3.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신정법인의 문화 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최근 2년 간의 문화적 기여 실적 등을 평가 ○ 향후 ○년 간의 문화적 기여 방안 및 실현계획 평가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5-1. 사업추진계획의 실적 및 향후 전략	5-1-1. 향후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절성	▪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시장전망의 합리성 및 목표점유율 설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기업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의 적정성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계획의 구체성	비계량	○ 방송시장 등의 분석 및 예측 방법, 추정제무제표(매출액 등) 외의 종합성 등을 평가
	5-1-2.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 및 향후 전략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5-2.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5-2-1. 조직 및 인력운영 실적의 우수성 및 향후 계획	▪ 조직구조의 구체성 및 적정성	비계량	○ 조직구성과 사임추진계획 등의 정합성 등을 평가
		▪ 인력구성의 적정성		○ 분야별 소요인력 산정, 배치방안(직급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등을 평가 ○ 추경재무제표(인건비 등)와의 정합성 등을 평가
	5-2-2.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의 우수성 및 향후 계획	▪ 인력확보 방안의 적정성	비계량	○ 신규인력 충원계획,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교육훈련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		○ 교육투자규모 및 교육의 종류, 방법 등을 평가 ○ 추경재무제표(교육훈련비 등)와의 정합성 등을 평가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5-3. 향후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	5-3-1. 향후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 납입자본금 구성의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비계량	○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신청법인(기존법인에 한함) 및 주요 주주의 이사회 결의서, 주요주주의 자금출지능력 등을 통해 출자(출자)예정금액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현가능성의 지속력을 평가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신청법인의 자금조달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
		▪ 자금조달원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자금조달계획을 평가하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 ○ 영업활동을 통한 조달금액의 실현가능성은 수익 추정방법의 적정성, 시장전망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 재무활동을 통한 조달금액의 실현가능성은 차입약정서 등을 평가
		▪ 자금조달규모의 총분성		○ 자금운영금액 규모의 비교 평가
	5-3-2. 향후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 시설투자자금 산출의 적정성 ▪ 제작비 등 경상운영자금 산출의 적정성 ▪ 기타 자금 산출의 적정성		○ 사업추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 자금운영계획의 산출 가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5-4. 향후 사업성 분석	5-4-1. 향후 추정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 - 추정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비계량	- 매출액(광고, 협찬, PP수신료 수입 등) 구성내역 등을 평가 - 추정재무제표는 1차년도는 분기별로, 2차년도 이후는 연도별로 평가 - 추정재무제표 금액 추정 근거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DCF 방법(NPV, IPR 등)에 의한 재무적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등을 평가
	5-5.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실적 및 향후 계획	-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 경영감사기구의 적정성 - 기타 경영투명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 경영효율화에 대한 전략 및 비전 등의 적정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방안의 실효성 등을 평가 - 소액주주 보호계획, 회계부분의 투명성 확보방안, 신정비인 과 구성주주 간의 부당거래방지 방안 등을 평가
5-5.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실적 및 향후 계획	5-5-1. 경영의 투명성 확보 실적 및 향후 계획	- 대표자 등 임원, 편성책임자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기타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의 적정성		경영진의 관련업계 경력, 전문성, 주요 공헌 정도 등을 평가
	5-5-2. 경영의 효율성 확보 실적 및 향후 계획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6-1. 재정적 능력	6-1-1. 자기자본순이익율	• 자기자본순이익율	계량	○ 자기자본순이익율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
	6-1-2. 부채비율	• 부채비율		○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잔액)
	6-1-3. 총자산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 100) - 100
6-2. 자금출자 능력	6-2-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또 투지(출자)금액의 적정성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투자(출자) 금액	계량	
	6-2-2. 신장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 신장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6-2-3. 자기자본 100 투지(출자) 금액의 적정성	• 자기자본/투자(출자)금액 ×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6-3. 기술적 능력	6-3-1. 방송시설설치운영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채널 운영에 적합한 방송제작 및 편집관련 시설설치 계획의 이행정도와 향후 계획의 적정성 • 시설 운영 계획의 이행정도와 향후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6-3-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이행 실적 및 향후계획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의 이행 정도와 향후 계획의 적정성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 정도와 향후 계획의 적정성		

7. 방 송 발 전 을 위 한 지 원 계 획 및 이 행 어 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7-1. 방 송 발 전 을 위 한 지 원 실 적 및 지 원 계 획	7-1-1 방 송 산 업 발 전 기 여 계 획 의 이 행 실 적 및 향 후 계 획	- 방 송 발 전 기 여 계 획 의 이 행 실 적 및 향 후 계 획 - 방 송 장 비 산 업 기 여 계 획 및 연 구 개 발 (R&D) 계 획 의 이 행 실 적 및 향 후 계 획 - 방 송 인 력 양 성 계 획 의 이 행 실 적 및 향 후 계 획	비계량	- 방 송 기 기 산 업 육 성 지 원 계 획, 방 송 관 련 교 육 연 수 - 기 관 과 의 협 력 계 획, 방 송 장 비 산 업 연 구 개 발 실 적, 방 송 인 력 양 성 실 적 등 을 평 가
	7-1-2 유 료 방 송 시 장 활 성 화 기 여 방 안 계 획 의 이 행 의 이 행 실 적 및 향 후 계 획	유 료 방 송 시 장 활 성 화 기 여 방 안 계 획 의 이 행 실 적 및 향 후 계 획	비계량	플 랫 폼 사 업 자, pp와 의 협 력 실 적
	7-1-3 콘 텐 츠 산 업 육 성 계 획 의 이 행 실 적 및 향 후 계 획 (콘 텐 츠 산 업 투 자 실 적)	콘 텐 츠 산 업 육 성 에 대 한 투 자 이 행 실 적 및 향 후 계 획	비계량	
	7-1-4 콘 텐 츠 산 업 기 여 계 획 의 이 행 실 적 및 향 후 계 획 (콘 텐 츠 산 업 관 련 사 회 환 원 실 적)- 콘 텐 츠 관 련 단 체 지 원 및 협 력 실 적	콘 텐 츠 산 업 관 련 사 회 환 원 에 대 한 이 행 실 적 및 향 후 계 획	비계량	콘 텐 츠 관 련 단 체 지 원 및 협 력 계 획 등 을 평 가

8. 승인시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8-1. 승인시 부여한 준수조건 이행	8-1-1. 방송법 및 관련법령의 준수 여부	• 방송법 등 관련 법규위반 횟수와 정도	비계량	○ 실적 평가
	8-1-2. 주요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 변동 여부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주요 주주의 지분변동 여부	비계량	○ 실적 평가
	8-1-3. 출연금 납부 여부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의 3개월 이내 납부 여부	비계량	○ 실적 평가
	8-1-4. 방송개시 시점	•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방송개시 여부	비계량	○ 실적 평가
	8-1-5.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	•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 후 시행 여부	비계량	○ 실적 평가

8. 승인시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8-1. 승인시 부여한 준수 조건 이행	8-1-6. 승인시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언어 순화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활성화, 지역밀착형 방송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이행실적 제출 여부 ▪ 어린이, 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 PP 및 유료방송과 협력 등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비계량	○ 매년 1월 3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했는지와 향후 계획을 평가
	8-1-7.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을 사업계획서대로 이행 여부	비계량	○ 실적 및 계획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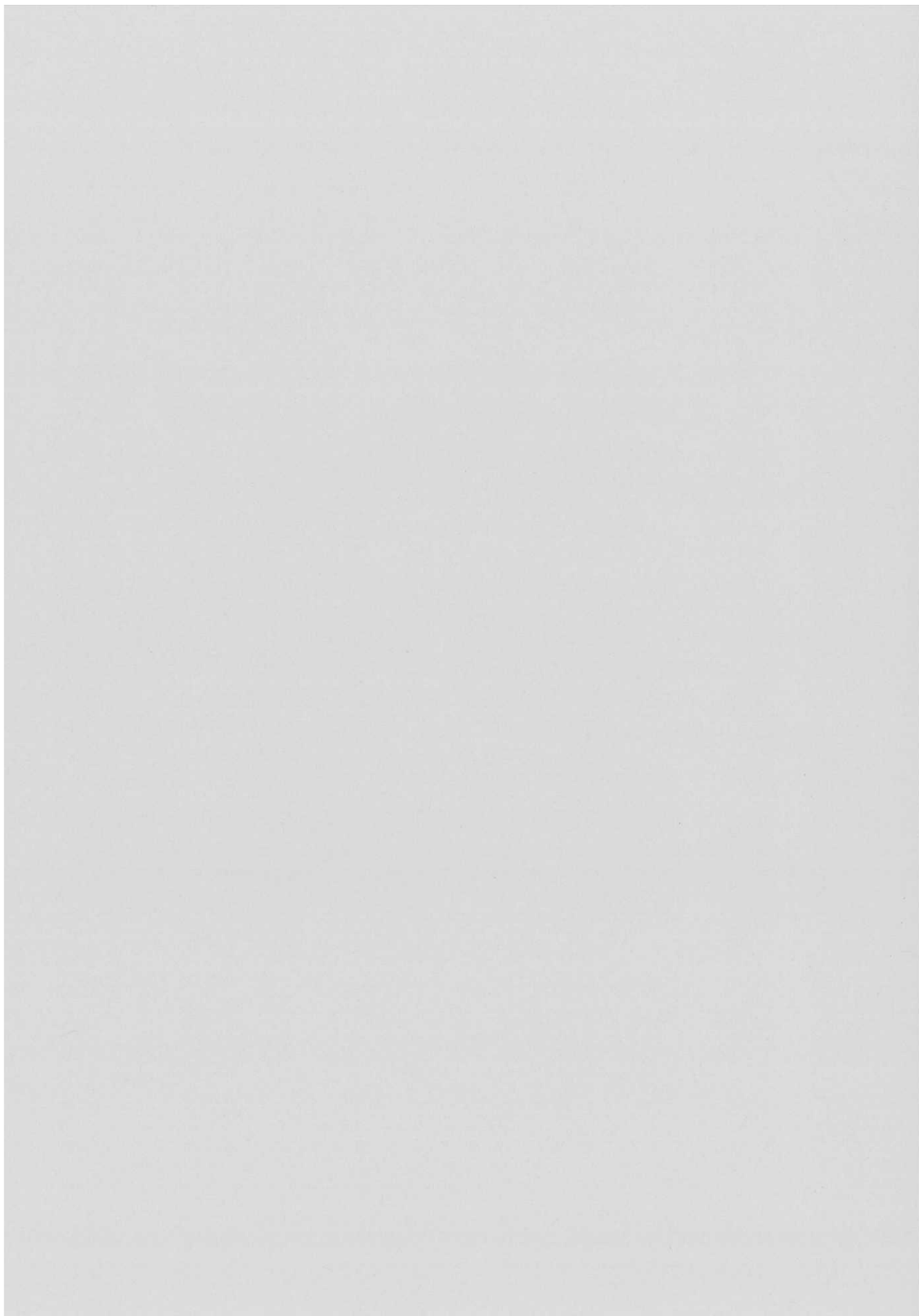
8. 승인시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8-1. 승인시 부여한 준수조건 이행	8-1-8.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편성시행과 이행여부 제출 (종편)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매반기 전체방송 시간의 60% 이상 편성 및 실적제출 여부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매 반기 전체방송 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 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 및 실적제출 여부	비계량	○ 프로그램 편성 실적과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결과를 제출했는지와 향후 계획을 평가
	8-1-8. 뉴스의 차별적 수급(보도)	▪ (주)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받았는지의 여부		○ 실적 및 계획 평가
	8-1-9.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 협조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의 협조 정도	비계량	○ 실적 및 계획 평가

감사합니다

Do joonho's ONE®

**2.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관련
2차 토론회 발제문(2013. 9. 2.)**



중편 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
연구반 최종 의견 종합안

2013년 9월 2일
숙명여대 미디어학과
도준호

목차

- I. 재승인 심사안 구성안
- II. 재승인 심사 항목

Ⅰ. 재승인 심사안 구성 방안

연구반 논의 진행 경과

- 8월 5일 개최된 토론회 안에 대하여 사업자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음
- 항목별 증빙사항을 정리하고 대항목에 대한 배점을 부여함
- 토론회 때 제기된 의견들과 사업자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연구반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종편, 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 최종 의견 종합안을 방통위에 제시함

심사안 구성을 위한 연구반

- 연구반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해당분야 경력, 전 공분야 등)
총괄책임자	숙명여대	교수	도준호	방송정책
	동국대	교수	강재원	방송정책 방송경영
	숙명여대	교수	강형철	방송정책
	상지대	교수	김경환	방송정책
	국민대	교수	김도연	방송정책
	전남대	교수	주정민	방송정책
	KISDI	책임연구원	황준호	방송정책

- 방송정책 및 방송경영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재승인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심사안으로 제시된 견해는 연구반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한 것임

심사안 구성시 고려 사항 |

- 재승인 기준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미래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함
 - ✓ 실천 성과와 계획을 같이 평가할 경우 '실제' 성과의 결과가 '보증하기 어려운' 계획에 의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 항목과 계획 항목은 구별되어 평가되어야 하겠음
- 승인 조건 이행 실적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차후 재승인 시의 계획에 대한 실천성을 담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 이는 계획에 대한 점수 비중은 낮게 이행 실적에 대한 점수 비중은 높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종합편성채널의 채널 분류를 고려, 기실시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사안 구성시 고려 사항 II

- 종합편성채널 승인의 목표 성취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음
- 종합편성채널 방송 이후 드러난 사회적 문제 제기를 고려하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임: 방송 국정생 및 품격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반영되어야 함
- 심사항목이 많아지면 종합점수화 하였을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중점 심사 요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어 결국 **문제는 드러났으나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딜레마를 해결하여야 함**

재승인 관련 사회적으로 제기된 이슈들 |

- ❖ 제316회 국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내용 정리
- 2010년 승인 당시의 승인심사기준 반영
 - ✓ 승인 당시의 4가지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
 - ✓ 재승인시 4가지 기준에 근거해야
 -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 방통심의위원회의 실태조사 반영
 - ✓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심의결과, 제재결과 등을 심사에 반영
 - ex) 증편의 역사 왜곡 보도 -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북한과의 관련성 보도
 - ex)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국정원의 여직원 인권유린이라 보도
 - ✓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지켜져야
 - ✓ 방송의 품격 어느 정도 지켜져야

제승인 관련 사회적으로 제기된 이슈들 II

❖ 제316회 국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내용 정리

• 방송평가 반영

- ✓ 지상파는 재허가시 방송평가 비중이 40%임
- ✓ 종편 또한 동일한 비중으로 방송 평가를 재승인시 반영
- ✓ 같은 방송법의 기준에 준하면 평가기준의 배점평가는 같아야 함
- ✓ 배점기준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 편성실태 반영

-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 문제 (새벽 5~6시)
- ✓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 문제 (새벽 3시~5시)
- ✓ 재방비율, 삼방비율 계속해서 증가 (재방비율 60%)
- ✓ 승인당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하지 않음
- ✓ 방송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있음으로 재승인 심사 때 반드시 평가하고 반영

재승인 관련 사회적으로 제기된 이슈들 III

❖ 이석기 위원실 주최 토론회 내용

- ❖ 재승인 심사기준 최우선 3대 과제 (이석기 의원 발표)
- ❖ ① 이행실적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 ❖ ② 재정능력 (시청률지상주의, 막장방송 방지)
- ❖ ③ 심의규정 위반하는 경우 패널티
- ❖ 계량평가 강화 : 비계량평가(1000점 중 725점)의 비중이 컸던 승인 심사와 달리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평기로 심사기준을 마련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방송법 근거 조항 |

• 제10조(심사기준·절차) 1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방송법 근거 조항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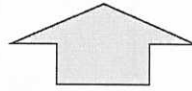
• 제17조(재허가 등) 3항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항목표

2012년(2012년말 허가기간만료 사업자)			
심사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가지표	
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400	계량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150	비계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50	비계량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	비계량	
5. 경영 적정성	50	비계량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	비계량	
7.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50	비계량	
8. 시청자의 권익 보호	75	비계량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0	계량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계		1000점	



2013년(2013년말 허가기간만료 사업자)			
심사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가지표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계량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150	비계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75	비계량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	비계량	
5. 경영의 적정성	50	비계량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	비계량	
7.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50	비계량	
8. 시청자의 권익 보호	85	비계량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	계량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계		1,000점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종편 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 대항목 및 평가지표

심사항목	평가지표	비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계량 (2012년 평가)	방송법 제17조 제3항
2.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및 제17조 제3항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계량/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비계량	방송법 제10조 제1항 및 제17조 제3항
8. 승인시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비계량	방송법 제17조 제3항
9. 관련 법령 준수	계량(감점)	방송법 제17조 제3항

심사항목 이슈 및 차별화 요소!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제기된 이슈	✓ 방송의 공정성 및 품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 정책 목표였던 다양성과 관련된 공정성 확보 방안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는 사안임
차별점	✓ 종편은 자유재가 아니라 국가가 허가하는 언론사임으로 주관적 시각을 지닌 다양한 채널들의 경합을 통해 전체적인 공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정책 방식은 적절치 않음 ✓ 승인 사업인 종편은 자체적으로 내적 공정성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제기된 이슈	✓ 종편 출범 당시 정책 목표인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의 확대”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은 종편이 여타 채널과 차별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하고 제작함으로써 가능 ✓ 또한 종편 출범 후 애초에 기대한 콘텐츠 시장에서의 새로운 제작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종편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점검
차별점	✓ 본 영역의 평가요소에 있어서 종편의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대비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함 ✓ 본 영역은 종편의 초기 운영의 핵심적 실적에 대한 평가이므로 해당 영역 배점을 여타 플랫폼 및 지상파 등의 재하가 심사시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총 배점에서 방송평가위원회 평가결과(400점)과 허가시 부여된 조건 등의 이행여부 등을 제외한 점수의 1/4정도로 함어 적절할 듯(100점 ~ 125점)

심사항목 이슈 및 차별화 요소 II

•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제기된 이슈	✓ 사회적 기여 실적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 이행실적과 관련해서 심사항목 평가시 기존의 모회사인 신문사 소속인력이 종편으로 이동한 숫자는 신규일자리 창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 지역적 기여와 관련해서는 전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편의 지역사회 기여실적이 필요한가라는 논란이 사업자로부터 제기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시민단체 등에서는 종편사업자는 전국적 서비스 사업자이므로 일정정도 지역콘텐츠 유통 및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한 실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차별점	✓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의 경우 타방송사업자와 재허가시 차별화되는 요소는 없으나 지역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앞에 기술한 것처럼 전국권역의 서비스 채널인 종편채널에 이러한 심사항목을 넣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반대로 꼭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적 필요성과 타당성 항목의 심사항목 포함여부는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심사항목에 지역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이를 참고하여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 판단

심사항목 이슈 및 차별화 요소 III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제기된 이슈	✓ 종편 도입의 정책목표 중 “콘텐츠 시장 활성화,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구조” 및 “경쟁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종합편성채널의 경영계획과 중요한 관련성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계획”,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 “제작비 등 경상운영자금 산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도 및 계획을 심사할 수 있을 것 ✓ 종편 재심사에 대한 논의가 공정성과 같은 이슈에 매몰, 정책 목표에 따라 종편 재심사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산업적 관점과 공익적 관점의 균형된 관점 설정이 필요
차별점	✓ 지금까지 국내에서 허가, 승인사업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업적 관심이 공익적 관점보다 큰 방송사업자 허가나 승인 자체가 종편 이외에는 전무 ✓ dmb, iptv 등 신규 유료방송 플랫폼의 경우 방송산업의 경쟁 활성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나 콘텐츠 분야(채널 사업)에서는 언제나 공익적인 이슈가 우세 ✓ 따라서, 이번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과 세부 심사기준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

심사항목 이슈 및 차별화 요소 IV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제기된 이슈	✓ 신규 콘텐츠의 제작에 투입하는 투자금은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요 요소로 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구성관련한 정치적 이슈로는 실제 주요주주가 사실상 포함되지 않아 주요주주로서의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비상장사 주주 비중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요주주의 재정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신용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차별점	✓ 종편이기 때문에 타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차별화 되는 요소를 본 심사항목에서는 찾기 힘들 ✓ 다만, 재정과 기술적 능력 전반에 대한 비중을 다소 낮추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이는 초기 사업자 상황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봐야할 심사항목일 가능성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제기된 이슈	✓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 확립은 종편 도입의 주요 정책 목표임 ✓ 종편은 기존의 유료방송 콘텐츠와 차별화 되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여 유료방송 시청자의 지불의사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탄생했음 ✓ 하지만 초반 성과 부실에 따른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프리미엄 콘텐츠 제공을 실현하지 못하고 제작비 절감을 위하여 보도 프로그램 비중이 증가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수신료 장수 이슈 역시 의무재송신 제도와 맞물려 논란임
차별점	✓ 방송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여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다른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비하여 보다 비중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다만 방송사업 특성상 단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심사항목 이슈 및 차별화 요소 V

• 승인조건 이행 여부	
제기된 이슈	✓ 승인조건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존재함. 특히 야당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승인조건에 준수여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에 승인조건에 경우 단순히 재승인을 평가하는 하나의 항목이기 보다는 재승인의 결정사유로 보는 시각도 존재함. 즉 재승인시 최초 승인시 제시한 승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승인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차별점	✓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승인조건은 9가지 항목으로 다른 사업자에 비해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방송서비스를 시작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 경영 등 세 부적인 여러 항목을 승인조건에 적시하고 있음. ✓ 승인조건에 종합편성채널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및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연구반 심사안의 특성

- 핵심심사 항목 선정
 -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을 재승인 심사에서 핵심 심사 항목으로 선정
 - 이 두항목에 대해서는 총점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 배점이 60% 미만인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함
 - 1000점 만점에 650점이 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 두 항목 점수가 60% 미만이면 총점에 관계 없이 제재를 받는 것 조항임
 - 이 제재 조항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시에는 없는 조항으로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사회적 우려와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음

연구반 심사안의 특성

- 제재 방안으로는 '조건부 재승인'안이 제시되었고 연구반 논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인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안이 제시 되었음
- 처음에 '재승인 거부' 대신에 '조건부 재승인'안이 제시된 배경은 이러한 제재안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도 없고 사업자로서 처음 맞는 재승인 상황을 고려한 것임
- 하지만 방송사업자로서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조건부 재승인'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안인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이 제시됨
- 이 두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제안을 적시해서 연구반 의견으로 방통위에 제시함

II. 재능의 심사 항목

제승인 심사 대항목 심사배점

심사항목	심사배점 (중편/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00점
2.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180점/200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180점/160점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50점/50점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80점/80점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점/80점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0점/70점
8. 승인시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60점/60점
9. 관련법령 준수	감점제
총합	1000점

2. 방송의 공적 책임 · 공공성 ·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 지표
2-1.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2-1-1.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적책임 수행 실적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수행 실적	비 계 량
	2-1-2. 방송의 공정성 구현	•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다양성 이행실적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이행 실적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 '공정성'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2-1-3.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구현	• 재난방송 편성 실적 • 방송연어 순화 실적 •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임적 공익광고·캠페인 포함) 편성 실적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등 '공익성'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2-2. 신청법인의 적정성	2-2-1.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적 정성 및 건전성	• 신청법인(대표자, 편성책임자 포함) 및 주요주주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비 계 량
	2-3-1.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	• 시청자 권익실현 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어린이, 청소년 보호방안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장애인 지원방안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노약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2-3-2. 시청자 참여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보장방안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2-3. 시청자 권익 실현	2-3-3. 시청자 불만처리	• 자체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 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에 근거하여 구체적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비 계 량

2. 방송의 공적 책임 · 공공성 · 이익성의 실현가능성

◆ 핵심 심사항목에서 점수가 누락되는 경우 의견

- 핵심심사 항목의 경우(대항목 2번, 3번) 사업자가 획득한 총점과 관계없이 해당 항목의 달성 점수가 낮은 경우(배점의 6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로 심사한다.
- 2-1. 공적책임, 공정성, 이익성 실현 항목의 경우 사업자가 획득한 총점과 관계없이 해당 항목(2-1)의 달성 점수가 낮은 경우(배점의 6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으로 심사한다.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적 절성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 성의 우수성 및 독창성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의 적절성 ■ 방송분야별, 장르별 편성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 기획·편성의 독창성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참신성 ■ 기존 종합편성 (보도)방송과의 구제적 차별성	비 계 량
	3-1-2.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 편성의 독립성 및 자율성	
3-2. 방송프로그램 수급의 적절성	3-2-1. 방송프로그램 수급의 적절성 (자체제작,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구매 등)	■ 방송프로그램 수급의 적절성 ■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구매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비 계 량
	3-3.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의 적 절성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련 정책 노력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 및 향후 계획 ■ 국내 콘텐츠 유통의 실적 및 향후 계획 ■ 국외 콘텐츠 유통의 실적 및 향후 계획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 지표
4-1. 지역적·사회적 회적·문화적 기여도	4-1-1. 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신청법인의 문화 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계 량
	4-1-2.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신청법인의 지역적 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변경된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5-1.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 적 및 향후 전략	5-1-1. 향후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절성	▪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시장전망의 합리성 및 목표점유율 설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기업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의 적절성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계획의 구체성		비 계 량
	5-1-2.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 자실적 및 향후 전략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2. 조직 및 인력운영	5-2-1. 조직 및 인력운영 실적의 우수성	▪ 조직구조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인력구성의 적절성 ▪ 인력확보 방안의 적절성 ▪ 교육훈련의 우수성 및 적절성		비 계 량
5-3. 자금 조달 및 운영	5-3-1. 자금조달 및 운영의 적절성	▪ 남임지본금 구성의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 자금조달원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자금조달규모의 충분성		비 계 량
5-4. 사업성 분석	5-4-1. 추정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 정성	▪ 추정재무제표의 적절성 ▪ 추정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절성		비 계 량
5-5.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5-5-1.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향후 계획	▪ 경영효율성에 대한 전략 및 비전 등의 적절성 ▪ 대표지 등 임원, 핵심책임자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기타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의 적절성		비 계 량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변경된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 지표
6-1. 재정적 능력	6-1-1. 안전성 측정비용	▪ 유동비용, 부채비용	계 량
	6-1-2. 수익성 측정비용	▪ 자기자본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6-1-3. 활동성 측정비용	▪ 총자본회전율	
	6-1-4. 성장성 측정비용	▪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6-2. 기술적 능력	6-2-1. 방송시설설치운영 계획의 이 행실적 및 향후계획	▪ 채널 운영에 적합한 방송제작 시설설치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시설 운영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계 량
	6-2-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 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 정도 및 향후 계획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변경된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 지표
7-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7-1-1. 방송 산업 발전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방송발전 기여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계 량
	7-1-2.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계획 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7-1-3. 콘텐츠 산업 육성·기여 계획 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에 대한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8. 승인시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8-1. 승인시부여한 준수조건 이행	8-1-1.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 후 시행 여부	
	8-1-2. 사업계획 이행실적 제출여부 및 충실도	-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인어 순화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활성화, 지역밀착형 방송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이행실적 제출 여부 - 어린이, 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 콘텐츠 제작시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 PP 및 유료방송과 협력 등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이행실적 제출 여부	
	8-1-3.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을 사업계획서대로 이행 여부	
	8-1-4.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편성시행과 이행여부 제출(중편)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매반기 전체방송 시간의 60% 이상 편성 및 실적제출 여부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매 반기 전체방송 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 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 및 실적제출 여부	
	8-1-5. 뉴스의 차별적 수급(보도)	(주)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받았는지의 여부	
	8-1-6.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 협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의 협조 정도	

9. 관련법령 준수 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9-1. 관련법령 준수	9-1 방송법 및 관련법령의 준수 여부 (감점)
	9-2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 제승인 심사평가점수 합계가 1000점 만점에 650점 미만 사업자에게는 ‘제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제승인’ 으로 심사한다.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제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항목 관련 토의 내용

- ❖ 방송평가 비중이 400점에서 300점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계량평가 심사항목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년치 평가를 받는 지상파와 달리 2012년만을 대상으로 평가 받는 이번 재승인의 경우 동일한 적용이 어려워 비중을 줄였지만 사실 비계량 항목의 비중이 늘어나고 계량평가 항목의 비중이 줄어드는 점은 좀 부담되기도 합니다. 방송평가 비중을 350점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 ❖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평가결과를 300점으로 할 것인가, 400점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에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재허가 심사기준이 너무 정성적인 것들이 많아 정량적인 성격을 갖는 방송평가를 반영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고, 또한 공익적 성격을 평가하는 방송평가결과를 활용하자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300점과 400점의 논의는 나머지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이 얼마나 정량적인가, 정성적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이 다른 재허가 심사기준에 비해서 별다른 정량적인 평가항목들이 많지 않다면 40% 정도를 방송평가 결과로 반영하고자 하는 재허가, 재승인 심사의 기본원칙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400점으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 두번째, 첫해이기 때문에 300점으로 하자는 의견도 다시 생각해보니 방송평가의 많은 항목들이 첫 해이기 때문에 유리한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는 경영적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은 거의 없고, 투자라든가 편성내용과 같이 그해 그해 성과가 보이는 평가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3년치가 있으나 1년치가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초기 1년치이기에 종편에게 유리한 항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평가의 경우, 지상파는 만점이 1000점이지만, 종편은 700점입니다. 만약에 재승인 심사기준에 방송평가결과를 400점을 책정한다면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송평가 결과가 만약에 종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나온다면 방송평가 결과 점수를 400점으로 반영한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항목 관련 토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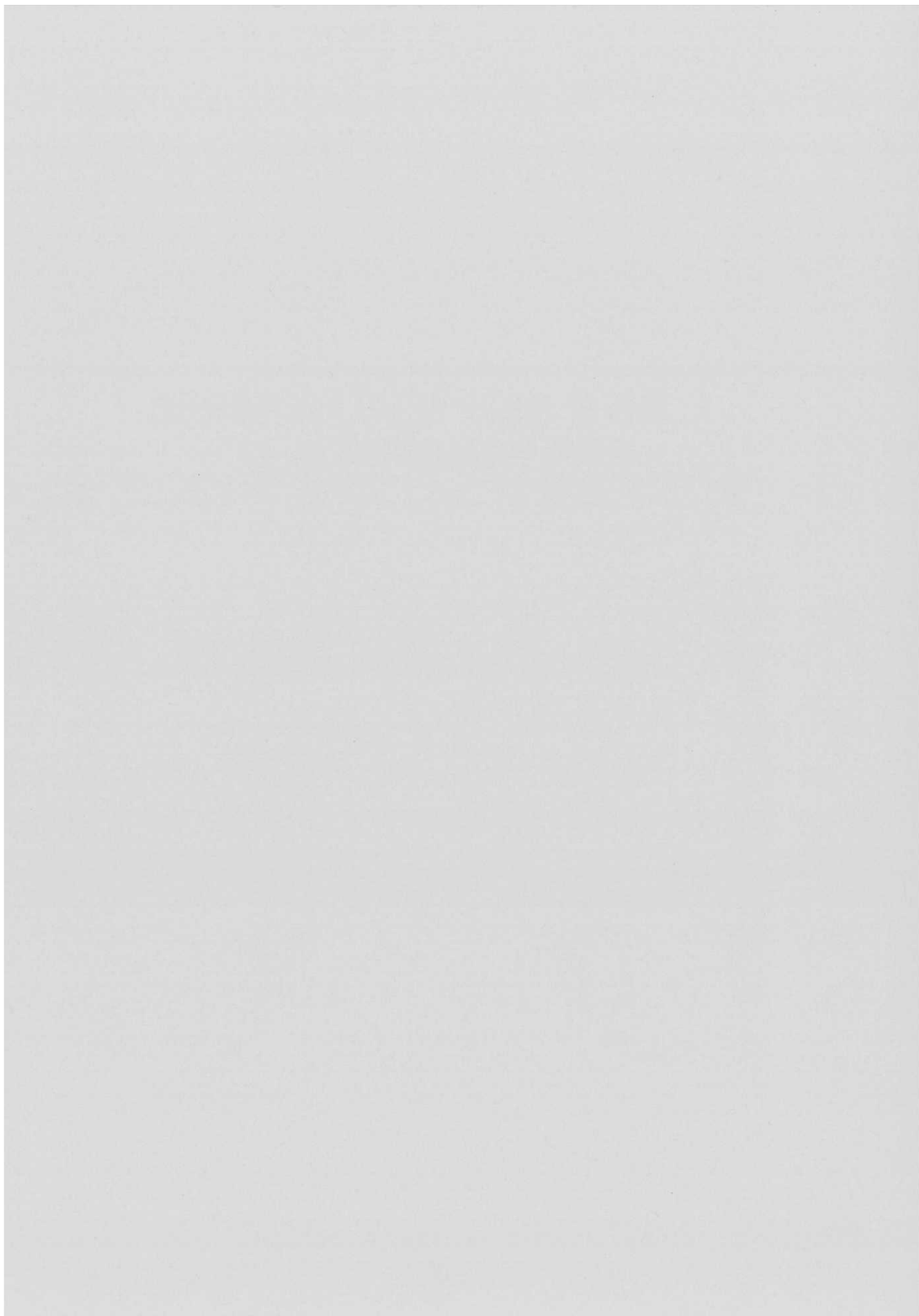
❖ 방송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업자들의 주장처럼 계량평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지수의 비중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들과 전문가 등도 이러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방송평가 비중을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지회가 300점으로 정한 토직은 방송평가는 1년 실적 기준이고, 재승인 사업계획서는 2년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자들의 재승인 사업계획서도 정확하게는 2년이 채 못 되는 1년 9개월(2011년 12월- 2013년 8월 말까지 실적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00점은 과다하고, 300점은 배점이 낮기에 350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Do joonho's ONE[®]

3.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안건)
- 방통위 의결보류(2013. 9. 4.)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 - 32 - 129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3. 9. 4.	
공개여부	공 개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등 5개사 -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3. 9.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등 5개사 -

<2013. 9. 4.(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4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등 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 1개사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 유효기간
종편	(주)조선방송	TV조선	오지철	'14.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4.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유재홍	'14.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용성	'14. 11. 30
보도	(주)연합뉴스티브이	뉴스Y	송현승	'14. 3. 31

※ 승인 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TV조선·JTBC·채널A·뉴스Y와 MBN의 심사를 분리하여 진행

4.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

가. 종편·보도PP 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

-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

* '10년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 ①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②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

-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10년 종편·보도PP 최초 선정시에는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시함

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유지

-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함

5.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 분야별 심사위원 10인으로 구성(심사위원장 포함 총 11인)

구분	전문분야	비고
심사위원 (11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2)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경영·회계 분야(3)	회계사,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단체(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6. 심사기준

가. 주요 고려사항

-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마련
- 외부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연구반 제시안을 반영

나.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절차) 및 제17조제3항(재허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구성

< 재승인 심사사항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9.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
- 제31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점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②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둠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에서 중복 감점하는 의견을 제시

-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

○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

-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대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

③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둠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5호에 규정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둠

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4호에 규정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둠
-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음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6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5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⑦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⑧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7호에 규정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6호에 규정된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⑨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다. 배점

〈1안〉

-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 1년치만('12년)만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 종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함

〈2안〉

-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400점을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0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의 배점은 지상파방송 재허가·보도PP 재승인시 배점, 연구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분

< '14년 종편·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 >

심사사항	'14년 종편 PP 재승인		연구 반 종편	'13년 자생파 재하가	'14년 보도 PP 재승인		연구 반 보도	'12년 보도 PP 재승인
	(1안)	(2안)			(1안)	(2안)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400	300	400	350	400	3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20	200	180	235	280	250	200	28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40	180	75	130	120	160	1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80	80	65	50	50	80	5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60	80	50	60	60	80	60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30	70	50	20	20	70	30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기여	30	30	50	75	40	40	50	60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60	60	50	70	60	60	-
9.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 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총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재승인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 부과
-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가능(방송법 제16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16조제2항)

8. 향후 추진계획

- '13.9월초 재승인 신청 공고(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 ~ 13.10월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 '13.10월~12월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등
- '14.1월~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2월중 재승인 의결
- '14.5월~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 진행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기본계획(안). 끝.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안

1.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보도PP) 1개사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 유효기간
종 편	(주)조선방송	TV조선	오지철	'14.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4.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유재홍	'14.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용성	'14. 11. 30
보 도	(주)연합뉴스티브이	뉴스Y	송현승	'14. 3. 31

※ 승인 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TV조선·JTBC·채널A·뉴스Y와 MBN의 심사를 분리하여 진행

2. 경과 사항

- '11.3월~5월 「종편·보도PP 승인」 위원회 의결
- '13.7.17.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 구성
- '13.8.5. 심사기준 초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연구반)
- '13.8.9. 종편·보도PP의 의견 수렴(연구반)
- '13.8.23. 최종 심사기준안을 위원회에 제출(연구반)
- '13.9.2. 연구반의 최종 심사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방통위)

3.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

가. 종편·보도PP 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

-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

* '10년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 ①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②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

-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10년 종편·보도PP 최초 선정시에는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시함

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유지

-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함

4.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① 구성 원칙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재승인 심사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

② 구성방안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0인으로 구성(심사위원장 포함 총 11인)

구분	전문분야	비고
심사위원 (11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2)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경영·회계 분야(3)	회계사,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단체(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③ 위촉기준

- 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분야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 결격 사유

- 201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자
-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 심사위원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
-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5.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기본 방향

-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② 심사위원회의 업무

-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 논의·결정
-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평가
-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제시 등

③ 의견청취

- 청취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청취대상자 :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참석대상자는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결과처리 :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④ 심사평가 방법

1) 평가 원칙

-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10인) 각각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

2) 평가 방법

- 계 량 :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 ·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점 부여
- 비계량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

구 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0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6. 심사기준

가. 주요 고려사항

-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마련
- 외부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연구반 제시안을 반영

나.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절차) 및 제17조제3항(재허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및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구성

< 재승인 심사사항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4. 재정 및 기술적 능력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
- 제31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점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②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둠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여 중복 감점하는 의견을 제시

-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

○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

-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대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

③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둠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5호에 규정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둠

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4호에 규정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인력운영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둠
-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음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6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5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⑦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⑧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7호에 규정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6호에 규정된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⑨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다. 배점

<1안>

-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 1년치만('12년)만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 종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함

<2안>

-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400점을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0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의 배점은 지상파방송 재허가·보도PP 재승인시 배점, 연구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분

< '14년 종편·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 >

심사사항	'14년 종편 PP 재승인		연 구 반 종편	'13년 자상파 재하가	'14년 보도 PP 재승인		연 구 반 보도	'12년 보도 PP 재승인
	(1안)	(2안)			(1안)	(2안)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400	300	400	350	400	3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20	200	180	235	280	250	200	28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40	180	75	130	120	160	1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80	80	65	50	50	80	5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60	80	50	60	60	80	60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30	70	50	20	20	70	30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기여	30	30	50	75	40	40	50	60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60	60	50	70	60	60	-
9.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 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총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1안) >

심사사항(중편/보도)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지 표
		중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35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50	계 량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20/280)	· 공적책임 · 공정성 ·공익성 실현 (실적 및 계획)	130	180	비계량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70	80	비계량
	·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130)	· 기획·편성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70	60	비계량
	· 수급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50	35	비계량
	· 제작·협력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 재정적 능력	65	40	계량
	· 기술적 능력	15	1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60/60)	·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30	30	비계량
	· 조직 ·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20	비계량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0/4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실적 및 계획)	30	40	비계량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70)	·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0	70	비계량
9.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 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합 계		1000	1000	

<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2안) >

심사사항(종편/보도)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지 표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40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계 량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00/25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실적 및 계획)	120	160	비계량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70	80	비계량
	· 신청법인의 적정성	10	10	비계량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40/120)	· 기획·편성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60	50	비계량
	· 수급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 제작·협력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 재정적 능력	65	40	계량
	· 기술적 능력	15	1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60/60)	·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30	30	비계량
	·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20	비계량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0/4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실적 및 계획)	30	40	비계량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60/60)	·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60	60	비계량
9.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 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합 계		1000	1000	

7. 재승인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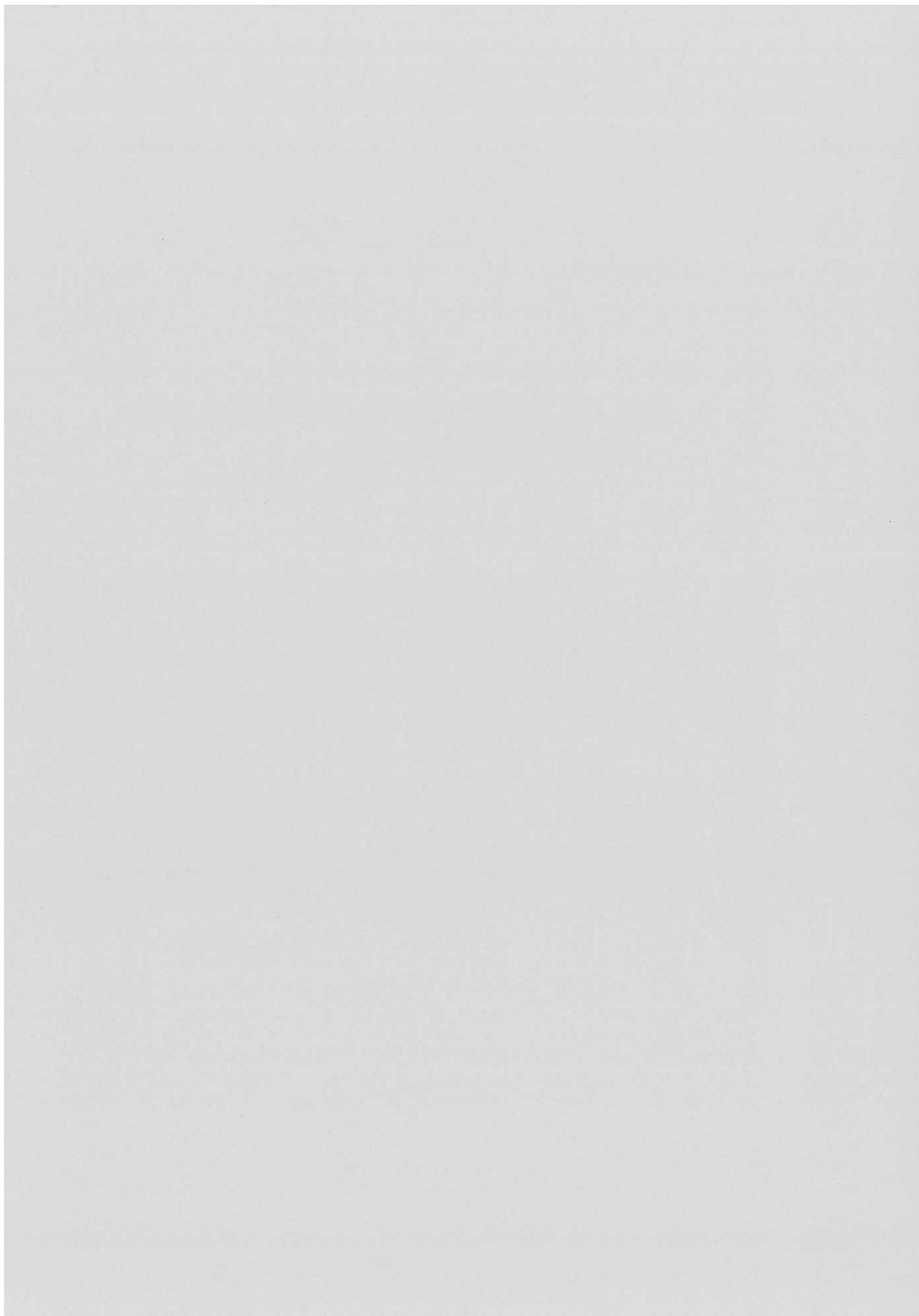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 부과
-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가능(방송법 제16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16조제2항)

8. 향후 추진계획

재승인 대상	일정	추진계획	비고
TV조선 · JTBC · 채널A · 뉴스Y	'13. 9월 ~ '13.12월	○ 재승인 신청 공지 ○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승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 시청자 의견수렴 ○ 관계부처 의견조회	- 위원회 홈페이지 - 시청자 의견수렴 공고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14. 1월 ~ '14. 2월	○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4일) ○ 재승인 의결	-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MBN	'14. 5월 ~ '14. 8월	○ 재승인 신청 공지 ○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승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 시청자 의견수렴 ○ 관계부처 의견조회	- 위원회 홈페이지 - 시청자 의견수렴 공고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14. 9월 ~ '14.10월	○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2일) ○ 재승인 의결	-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속기록)
- 방통위 의결보류(2013. 9. 4.)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9. 4(수)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다.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등 5개사 (2013-32-129)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다>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등 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개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승인 기본심사의 방향입니다.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심사기준을 구체화해서 심사위원회 심사에 관한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상세하게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0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를 평가하고,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외부전문가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개 심사사항과 17개 심사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송평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입니다. 이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17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하위 심사항목으로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

청자 권익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두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반에서는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또한 별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여 중복 감점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에 대해 연구반에서는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대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이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편성의 적정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두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심사항목으로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두고자 합니다.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해 왔습니다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와 제17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일곱 번째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3호와 제17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와 제17조제3항제6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배점입니다. 각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에 대해서는 2개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1안>은 재승인 총점 1000점 중에서 350점을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하는 방안입니다.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중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2안>은 재승인 총점 1000점 중에서 400점을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0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하는 방안입니다.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의 배점은 지상파방송 재허가·보도PP 재승인시 배점, 연구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페이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편PP 재승인 <제1안>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2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기여 3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감점처리하는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제2안>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50점을 더하여서 400점으로 하고, 반면에 제2항에서 20점을 감하고 제3항에서 20점을 감하고 제8항에서 10점을 감하는 내용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도PP 재승인에 대해서는 제1항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8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3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2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4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감점처리하는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2안>은 이에 비하여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50점 더하여 400점으로 하고 반면에 제2항에서 30점, 제3항에서 10점, 제8항에서 10점을 감하는 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17개 심사항목별 세부적인 배점 부여방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는 안입니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신청 공고토록 하고, 일부 사업자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0월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서 검토 및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고, 내년 1월~2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재승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MBN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 절차를 내년 5월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4페이지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보면 심사위원 10명에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단을 15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편 허가 당시에도 수많은 심사위원들이 참가해서 허가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자료가 공개되어서 비난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결국 방통위다, 그런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숫자를 늘려서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비계량 평가항목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심사위원들이 적으면 적은 만큼 형평성이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종편 허가 시에 내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때 심사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은 배제하고 중간치로만 평가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11명으로 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당시에는 14명이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 측면까지 포함해서 지상파 재허가가 10명, 11명의 심사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도준호 교수를 비롯한 종편 연구반에서 제기했던 '항목별 과락 60%를 넘지 못하면 과락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정리된 것으로 보면 지상파와 똑같이 40%에 국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종편채널의 공적책임에 관한 문제, 예컨대 종편에서 거르지 못한 공해적인 시사 토크의 배설적인 유포,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과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과목별 과락 수준을 60%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책임 부분이 비계량항목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계량 항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우리가 의결해서 확정된 행정조처에 대한 감점이 대략 한 항목에 1, 2점밖에 안 되지요? 지상파의 경우에 2점으로 되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과징금은 5,000만원 이하 10점, 5,000만원 이상 1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그러한 점은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상파 심사에 적용했던 감점이 금과옥조냐,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종편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종편이 저질러온 공적책임의 문제들은 객관적으로도 지상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비계량화된 공적책임 부분에 있어서 감점 1, 2점에 국한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정해서 심사위원단에게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중기 방송정책국장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심사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지상파도 13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종편의 경우 심사대상 사업자가 4개 사업자이고, 최초 선정 심사는 아니고 재승인 심사이기 때문에 11인으로 해도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11인으로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편 연구반에서 제시한 과락점수 60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점 650점 미만이면 결국은 '재승인 거부'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총점 650점이 과락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650점을 월등히 초과한 신청자가 일부 과목에서 60점을 못 받아서 만약에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승인'이 된다면 전체적인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약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평가의 전반적인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제공했던 것처럼 심사항목별 점수를 40점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비계량평가 관련해서 감점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습니다만 현재 방송평가 부분에서 방송평가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제재 조치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을 봤더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의'는 1점, '과징금'은 10점~15점까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의 틀과 달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적책임 부분에서 그 부분을 보다 더 많이 부과한다면 '12년도의 방송평가 내용에 대한 감점 부분과 사업계획서 부분에서 나온 평가의 내용에 감점이 달리 적용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방송평가 결과 부분에서 반영하는 감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단을 15명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1명, 원안에 보면 방송분야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명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분야도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명으로 늘리고, 경영·회계 분야는 3명으로 두고, 그리고 기술분야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와 소비자단체를 1명 늘려서 4명을 늘리면 정확히 15명이 된다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항목별 과락에 대해서는 지금 종편사업자들 가운데 재정능력이 과도하게 높고 또 여러 가지 시청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시청률 중에 이른바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시청률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공적책임의 외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버려둔다면 과거의 지상파 민방 때부터 흘러오는 시청률 지상주의를 위해 여과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방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하간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공적책임에서 공익성·공정성에 어긋난다면 그 점에 과락을 통해 조건부를 붙이든지 아니면 재승인을 거부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일단 1:1로 토론하는 것보다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다 듣고 나서 답변했으면 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덧붙여서 국장과 상임위원 간의 논쟁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내놓은 안이 연구반이 월요일에 발표한 안보다 대거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 있어서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저는 왜 갑자기 이런 안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수 늘리자는 것이 무슨 큰 문제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11인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회적 쟁점이 됐고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종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을 몇몇 여론조사에서 표현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11명보다 15명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상파를 근거로 드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상파는 그동안 수많은 재생의 과정들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 80년사의 기본적인 자기 검열들이 철저하게 행해져 있었기 때문에 5.18 북한 책동 같은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초대형 사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 기술적으로 실수하거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어서 관점에 따라 상당히 편차는 있지만 공정성의 문제가 불거질 뿐이지, 일방적인 편파성들이나 왜곡보도, 그다음에 거짓보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상파와 모든 준거의 틀을 지상파에서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번 재승인 여부 결정에 있어서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가 or로 갔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이제까지 모든 재승인에 점수와 상관없이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김용일 과장, 그렇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가 모든 것을 다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조건부 재승인이 들어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사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재승인은 조건부가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650점 미만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고 무슨 근거냐는 것입니다. 월요일 토론회에서도 '재승인 거부'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때 고려대 김성철 교수의 경우 교수 재임용 과정을 심사하는데 59점이라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고, 60점은 살려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엄격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반에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 고민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올려놓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떨어뜨리라는 것입니까,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59점이면 조건부 재승인하고 58점이면 재승인 거부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던져 놓았는데 2개를 동시에 올려놓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종합편성채널 선정 허가할 때 전체 과락 1,000점 만점에 800점이 과락이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총점 기준으로 800점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대항목별로 70점 과락이 있었고 60점 과락이 있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대항목이 70점이었고, 그다음에 중항목이 전체가 아니고 19개 중에 5개 항목이 60점이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된 내용들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통신 영역에서도 제4이통이 총점 70% 미만일 때 과락, 그다음에 항목별로 60점 미만일 때 과락, 통신도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합니다. 이것은 방송영역입니다. 지상파가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종합편성채널입니다. 그리고 연구반에서 올렸던 60%는 어디로 가고 왜 사무처에서 자의적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무처가 연구반을 왜 운영했습니까? 공청회를 왜 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자의성을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휘두릅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비상식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왔고 연구반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왜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이 수치들을 마음대로 낮추니까? 그러면 <제1안>, <제2안>으로 올리든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앞에 기본방향에서 밝혔듯이 지상파 재허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 양문석 상임위원

- 지상파 재허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재허가 조건을 유지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편은 수많은 특혜를 지상파보다 받고 규제는 수평적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영터리 논리가 어딴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지상파와 종편이 심사가 같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슨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지상파와 규제의 틀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본적인 보고서의 틀이 애초 전제가 잘못됐지요. 지상파와 심사조건과 기준의 틀을 같이 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영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흐름이 다 영터리이고 그렇게 했으면 연구반에서 그 전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반에서도 그런 일관성을 갖고 심사기준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반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흐름들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맞춰 왔는데, 지상파와 종편이 다르다는 전제 속에서 준비해 왔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지상파와 종편이 같다는 전제로 놓고 이렇게 왕창 바꾼다면 연구반을 왜 운영했습니까?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지상파와 종편이 같습니까? 퀄리티가 같고 제작비율이 같고 편성비율이 같고 유사합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방송법 규제 체계상 지상파 규제보다는 종편에 대한 규제가 중간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도무지 종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국회의 관심사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심사기준표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심사기준표를 기본적으로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양 위원님께서 발언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도 발언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구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만들지를 못해서 저희에게 건의할 때도 복수안으로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무국에서 만든 안이 가장 최선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고민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양 위원님이나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로 지상파 자료를 봤습니다. 그동안 재허가를 어떻게 해 왔고 재허가를 할 때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받아서 쪽 봤는데, 이것이 재허가를 할 때마다 불변의 기준은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그때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의적절하게 그 당시의 시류를 반영했던 고민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방송평가를 여기에 반영한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07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오래 전에는 600점까지 올라갔던 것이 점차 500점을 거쳐 400점까지 줄어서 방송평가의 관한 항목이 400점, 나머지가 600점 이렇게 운영이 됐고 그 600점 안에서도 배점 포션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매번 달라져 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 사무국에서 제시한 안에는 400점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연구반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줄여서 350점으로 하느냐, 2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평가가 포션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규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위법행위를 잡아내고 또는 허가나 인허가를 통해 규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점점 더 세련되어 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평가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평가의 비중을 자꾸 낮추게 되면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고심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벌써 오랫동안 쌓여온 노하우가 반영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자꾸 비중을 스스로 낮춰가는 것은 방통위, 정부 당국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적책임을 지금 중하게 물어야 한다, 야당 의원님께서도 많이 주장하셔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 공공성 부

분을 묻는 배점을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공성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한없이 강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법체계나 제도 안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상파가 가장 공공성 면에서는 앞서야 하고, 그다음에 PP가 더 뒤쪽에 있다면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종편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지상파를 기준으로 해서 적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무국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지상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냐, 공정성 부분도 저는 지상파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무국에서 바로 답변하기보다는 상임위원들 간에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어서 방평위를 김대희 위원님께서 높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구반에서 지상파에 적용하던 방송평가부분 400점 틀을 300점으로 낮추자는 논리가 무엇이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이 종편은 '11년도 12월에 개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12년도 1년치만 방송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300점이나 350점으로 낮추자는 의미였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거기에다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평가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천편일률적이고 도식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이 연구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비중을 1,000점 중에서 400점까지 넓혀 놓으면 나머지 종편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최초로 출연한 미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재승인에서 무사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체크포인트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300점이나, 350점이나 하는 논의가 연구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국에서 절충적으로 300점이 아닌 350점까지 정리한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큰 이야기 중의 하나가 왜 지상파가 기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지상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륜을 쌓아오다 보니까 지상파의 공익성·공공성이 쌓였지요. 물론 중간 어느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지상파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송이 PP도 있고, 보도채널, 종편채널 쪽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점을 지상파를 놓고 보면 지상파보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지상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공익성과 공공성이 부합해 들어오느냐를 보는 기준점이 지상파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배점이나 평가를 하면서 지

상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는 것이 있고 쪽 해 온 관례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존중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기준점 없이 그때그때마다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조금 유감스럽게 보는 것은 왜 사무국에서 <제1안>, <제2안>으로 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 사무국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1안>, <제2안>으로 해서 심사배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선 사무국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놓고 보면 고민은 되겠지요. 그러나 <제1안>, <제2안>을 가지고 한 자체에 대해 저는 마땅치 않다는 말씀드리면서 <7>번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부분은 그동안 지상과는 75점을 했지요? 그런데 종편은 지역방송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에 관해 배려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지역 부분은 10점으로 확 줄이고, 오히려 더 종편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공적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책임을 더 강화하는 부분에 사무국에서 중점을 뒀으면 어떨까, 그래서 사무국 스스로가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도 말씀하시고 바깥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과 관련해서 김충식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과락 부분을 40%로 할 것이냐, 60%로 할 것이냐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동안 쪽 해 왔던 지상과의 기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보도채널을 60%로 올렸다면 나중에 지상과의 기준도 60%로 올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1안>으로 가자, <제2안>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무국의 고민이나 철학이 완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홍성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데 바라보는 상황은 비슷한데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기준점이다, 지상파 콘텐츠가 기준점이고 국민의 눈높이는 지상파에 의해서 종편의 수준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종편은 터무니없이 수준이 저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 재승인 심사를 하느냐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지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보다 나은 방송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시청하기 위해서... 후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상파의 기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상파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합니까, 지상파보다 더 높게 규제를 해서 지상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현재 엉망인 부분들의 질서를 잡고, 콘텐츠의 질을 고르게 하고, 그리고 어떤 시청자들도 좋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어야 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보도의 공정성·공적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수준을 끌어 올리라는 의미에서 저는 연구반에서 60%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그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다음 심사 때는 55%, 50% 하면서

지상파와 중편을 놓고 시청자들이 채널 이름을 지우고, 번호를 지우고 똑같이 봤을 때 지상파와 중편채널들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지상파 준거점의 40%라는 것입니다. 왜 재승인 심사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봐주자, 말자, 때려잡자 말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심사라는 절차가 왜 필요했고, 이런 심사를 만들었고, 이 심사에서 무엇을 얻어낼 것이고 하는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60%지요.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홍성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 방송의 역사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적절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성에 있어서 짧은 역사를 가진 종합편성 채널이 얼마만큼 빠르게 정상화 또 국민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이 심사기준표에 녹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들을 저는 월요일에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연구반이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흔적들을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똑똑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느껴집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노력을 사무처가 아주 잘못된 기준 속에 일방적으로 낮춰버리는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반의 과정에도 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했을 것입니다.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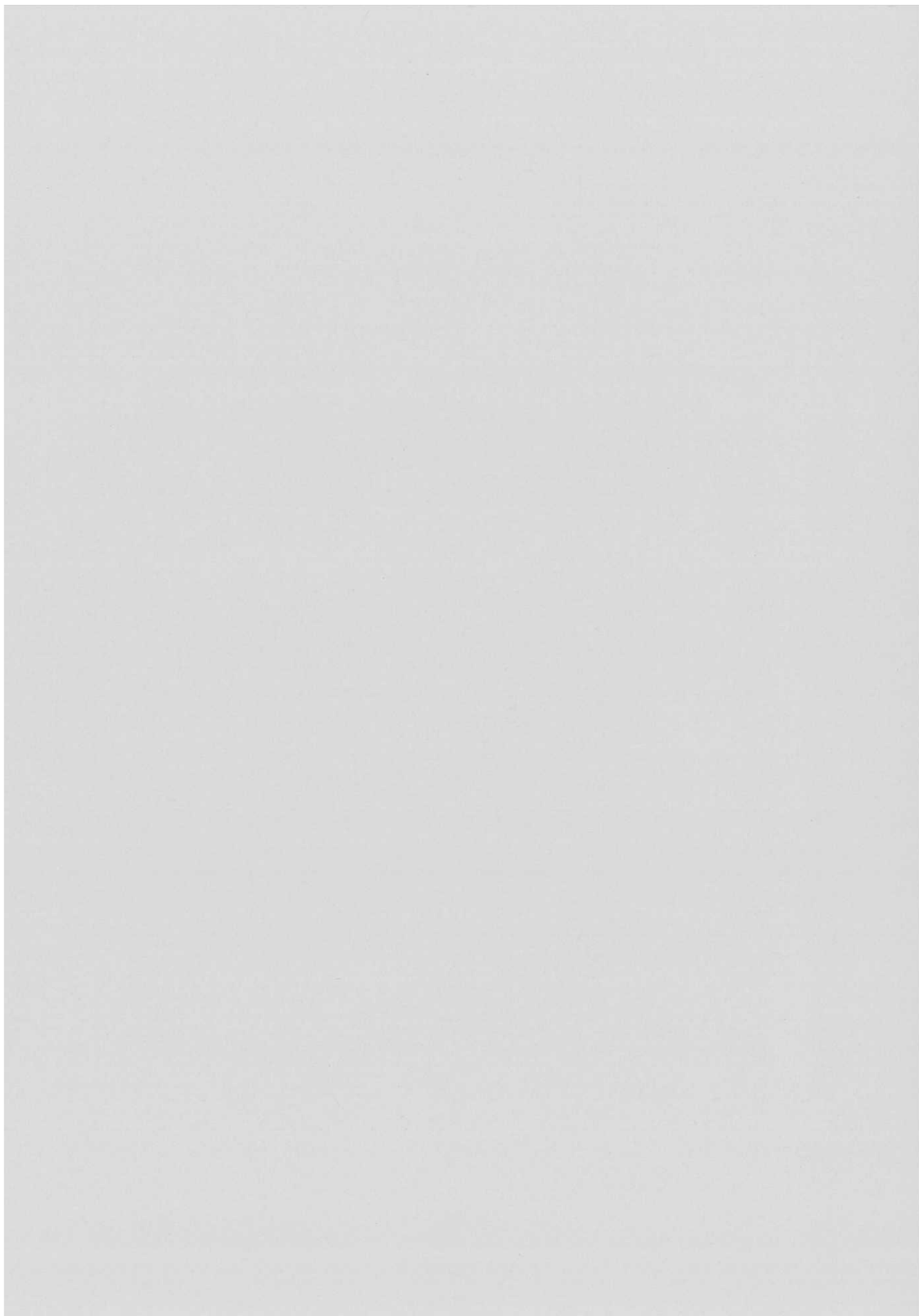
-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느냐, 첫 공청회 때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번 토론회 때 많은 언론들이 심사기준표에 대해 비판적인 어프로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상당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표에 상당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올린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토론을 충분히 하셨는데 옛날보다 중편 심사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엄격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계량화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숫자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정을 개입하지 말고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심사위원을 더 늘리자는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연구반에서 만든 것보다도, 정치권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상당히 더... 방송프로그램, 기획... 일반적으로 토론회가 50% 이상 차지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올리자고 해서 연구반보다 더 올리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락 문제도 양쪽에 논리적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과락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산수,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의 배점인데 과락의 문제를 제기한 것과 여기 보니까 배점이 다 다릅니다. 국어는 400점, 영어는 200점, 체육은 30점 줬는데 배점이 굉장히 적은 것이 과락이라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하느냐, 이런 통계학적 영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루 더 토론을 거쳐 시간상으로 9월 말 안으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기는 어려우니까 금주 내로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오늘 밤을 새서라도 협의를 해서 내일 오후 2시

에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결정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은 하루 더 논의를 거쳐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5.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안건)
- 방통위 수정의결(2013. 9. 5.)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 - 33 - 129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3. 9. 5.	
공개여부	공 개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등 5개사 -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3. 9.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수정의결)

- (주)조선방송 등 5개사 -

<2013. 9. 5.(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4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등 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 1개사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 유효기간
종편	(주)조선방송	TV조선	오지철	'14.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4.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유재홍	'14.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용성	'14. 11. 30
보도	(주)연합뉴스티브이	뉴스Y	송현승	'14. 3. 31

※ 승인 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TV조선·JTBC·채널A·뉴스Y와 MBN의 심사를 분리하여 진행

4.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

가. 종편·보도PP 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

-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

* '10년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 ①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②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

-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10년 종편·보도PP 최초 선정시에는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시함

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고려

-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함

5.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 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심사위원장 포함 총 15인)

구분	전문분야	비고
심사위원 (15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3)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경영·회계 분야(3)	회계사,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단체(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6. 심사기준

가. 주요 고려사항

-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마련
- 외부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연구반 제시안을 반영

나.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절차) 및 제17조제3항(재허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구성

< 재승인 심사사항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
- 제31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점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②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둠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에서 중복 감점하는 의견을 제시

-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

○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

-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대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

③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둠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5호에 규정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둠

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4호에 규정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둠
-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음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6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5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⑦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⑧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7호에 규정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6호에 규정된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⑨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다. 배점

-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 종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함

< '14년 종편·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 >

심사사항	'14년 종편 PP 재승인	연구 반 종편	'13년 지상파 재하가	'14년 보도 PP 재승인	연구 반 보도	'12년 보도PP 재승인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00	400	350	3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	180	235	280	200	28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80	75	130	160	1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80	65	50	80	5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80	50	60	80	60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70	50	20	70	30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20	50	75	40	50	60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60	50	70	60	-
9. 시청명령의 횟수와 시청 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총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 >

심사사항(종편/보도)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지 표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35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50	계 량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28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실적 및 계획)	140	180	비계량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70	80	비계량
	·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130)	· 기획·편성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70	60	비계량
	· 수급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50	35	비계량
	· 제작·협력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 재정적 능력	65	40	계량
	· 기술적 능력	15	1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60/60)	·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30	30	비계량
	·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20	비계량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4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실적 및 계획)	20	40	비계량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70)	·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0	70	비계량
9.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 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합 계		1000	1000	

7. 재승인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 부과
-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가능(방송법 제16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16조제2항)

8. 향후 추진계획

- '13.9월초 재승인 신청 공고(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 ~ 13.10월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신청기한 : 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 '13.10월~12월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등
- '14.1월~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2월중 재승인 의결
- '14.5월~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 진행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기본계획(안). 끝.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수정의결)

1.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보도PP) 1개사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 유효기간
종편	(주)조선방송	TV조선	오지철	'14.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4.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유재홍	'14.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용성	'14. 11. 30
보도	(주)연합뉴스티브이	뉴스Y	송현승	'14. 3. 31

※ 승인 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TV조선·JTBC·채널A·뉴스Y와 MBN의 심사를 분리하여 진행

2. 경과 사항

- '11.3월~5월 「종편·보도PP 승인」 위원회 의결
- '13.7.17.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 구성
- '13.8.5. 심사기준 초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연구반)
- '13.8.9. 종편·보도PP의 의견 수렴(연구반)
- '13.8.23. 최종 심사기준안을 위원회에 제출(연구반)
- '13.9.2. 연구반의 최종 심사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방통위)

3.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

가. 종편·보도PP 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

-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

* '10년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 ①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②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

-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10년 종편·보도PP 최초 선정시에는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시함

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고려

-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함

4.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① 구성 원칙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재승인 심사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

② 구성방안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심사위원장 포함 총 15인)

구분	전문분야	비고
심사위원 (15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3)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경영·회계 분야(3)	회계사,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단체(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③ 위촉기준

- 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분야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 결격 사유

- 201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자
-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 심사위원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
-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5.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기본 방향

-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② 심사위원회의 업무

-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 논의·결정
-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평가
-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제시 등

③ 의견청취

- 청취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청취대상자 :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참석대상자는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결과처리 :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④ 심사평가 방법

1) 평가 원칙

-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14인) 각각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

2) 평가 방법

- 계 량 :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 ·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점 부여
- 비계량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

구 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4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6. 심사기준

가. 주요 고려사항

-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마련
- 외부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연구반 제시안을 반영

나.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절차) 및 제17조제3항(재허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및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구성

< 재승인 심사사항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4. 재정 및 기술적 능력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
- 제31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점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②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둠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여 중복 감점하는 의견을 제시

-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

○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

-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대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

③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둠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5호에 규정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둠

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4호에 규정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인력운영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둠
-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음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6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5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⑦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⑧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7호에 규정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6호에 규정된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⑨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다. 배점

-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 종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함

< '14년 종편·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 >

심사사항	'14년 종편 PP 재승인	연 구 반 종편	'13년 자상파 재허가	'14년 보도 PP 재승인	연 구 반 보도	'12년 보도PP 재승인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00	400	350	3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	180	235	280	200	28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80	75	130	160	1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80	65	50	80	5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80	50	60	80	60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70	50	20	70	30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기여	20	50	75	40	50	60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60	50	70	60	-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 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총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 >

심사사항(종편/보도)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지 표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35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50	계 량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28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실적 및 계획)	140	180	비계량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70	80	비계량
	·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130)	· 기획·편성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70	60	비계량
	· 수급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50	35	비계량
	· 제작·협력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 재정적 능력	65	40	계량
	· 기술적 능력	15	1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60/60)	·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30	30	비계량
	·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20	비계량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4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실적 및 계획)	20	40	비계량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70)	·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0	70	비계량
9.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 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합 계		1000	1000	

7. 재승인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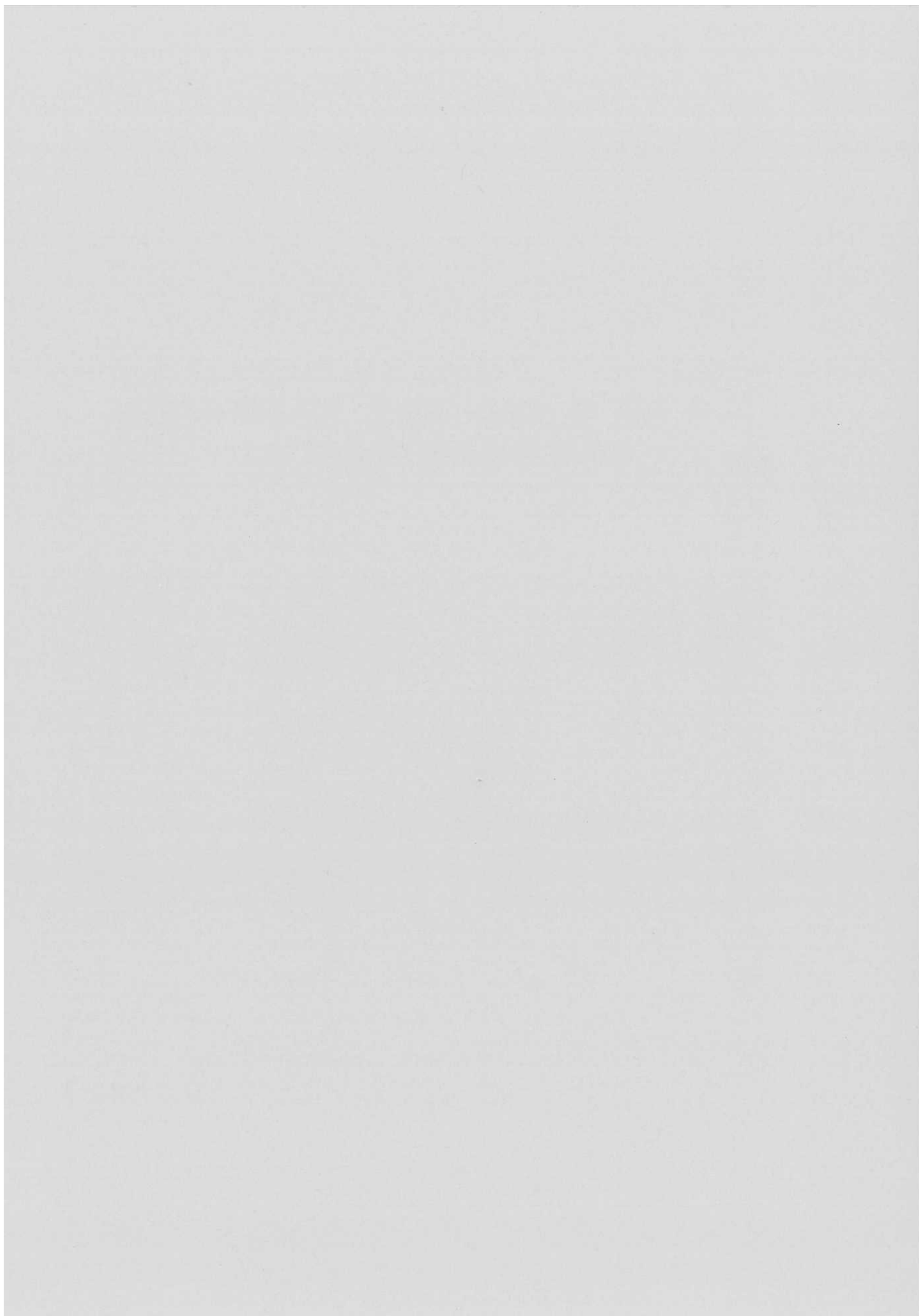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 부과
-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가능(방송법 제16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16조제2항)

8. 향후 추진계획

재승인 대상	일정	추진계획	비고
TV조선 · JTBC · 채널A · 뉴스Y	'13. 9월 ~ '13.12월	○ 재승인 신청 공지 ○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승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 시청자 의견수렴 ○ 관계부처 의견조회	- 위원회 홈페이지 - 시청자 의견수렴 공고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14. 1월 ~ '14. 2월	○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4일) ○ 재승인 의결	-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MBN	'14. 5월 ~ '14. 8월	○ 재승인 신청 공지 ○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승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 시청자 의견수렴 ○ 관계부처 의견조회	- 위원회 홈페이지 - 시청자 의견수렴 공고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14. 9월 ~ '14.10월	○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2일) ○ 재승인 의결	-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속기록)
- 방통위 수정의결(2013. 9. 5.)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9. 5(목) 14: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가.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13-33-129)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4년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등 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종편·보도 PP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방송분야는 3명, 법률분야 3명, 경영·회계분야 3명, 기술분야 2명, 시청자·소비자단체 3명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를 평가하고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심사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은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외부전문가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과 제17조제3항에서 명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심사사항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송평가 내용입니다.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는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입니다. 이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하위 심사항목으로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두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위반 사례’와 관련해서 연구반에서는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으로 구성해서 중복 감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해 왔습니다만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대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인데 이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심사항목으로 두고자 합니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심사항목으로 두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두고자 합니다.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시켜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배점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그리고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표>를 보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편 PP의 경우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2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처리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PP 재승인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8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3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

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2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4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그리고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심사항목별 배점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신청 공고하고, 10월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10월~12월까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는 한편 내년 1~2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 중에 재승인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는 내년 5월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먼저 전차 회의에서 의견이 상충했던 부분이 정리된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첫째,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1명이 14명으로 늘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하면 15명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방송분야, 법률분야, 기술분야, 시청자·소비자단체 1명씩을 포함해서 위원장까지 총 15명으로 늘린 것, 두 번째는 종편의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350점으로 확정하고, 세 번째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해 230점으로 10점을 늘리고 지역사회 발전기여가 종편은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10점을 낮춰서 확정 한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네 번째로 일단 과락에 대해 심한 논란이 있었는데 원안에는 40% 과락으로 일괄해서 정했던 것을 2가지 분야, 즉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부문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이 2가지에 한해서 과락을 50%로 높이고, 미달하는 경우에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부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한 부분입니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제한 내용을 주의, 경고 등의 감점으로 나가더라도 1점~4점밖에 감점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가 특별히 심사위원회에 대해 총 230점의 공적책임 부문이 전체가 비계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산술적으로 1점이나 4점을 감점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서 공적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심사위원단에게 주문할 것을 제안드렸고,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제 논의가 있었지만 과락을 60%로 할 것이냐, 40%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 끝에 50%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재승인'으로 그칠 것이냐, 혹은 '재승인 거부'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승인 거부가 붙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종편 심사 전체에 대해 650점 총점 과락을 놓고서도 '재승인 거부' 혹은 '조건부 재승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락시킬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공적책임과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분야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문에 있어서 특별한 과락 퍼센티지를 높이면서도 그 점에 대해 관대하게 '조건부 재승인'만을 허가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한 정신에도 원천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로 명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쪽 정리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어제 회의가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다시 하자고 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아까 정리한 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지상파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8페이지 <'14년 종편·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를 보면 <1>번 방송평가 위원회의 방송평가, 금년도 지상파 재허가의 기준이 400점인데 350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번 지상파는 235점인데 230점으로 했으면 이것도 강화한 것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지상파는 75점인데 160점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4>번도 지상파는 65점인데 80점으로 강화하고, <5>번도 마찬가지로 50점에서 60점으로 강화하고, <8>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점 자체가 굉장히 강화된 것입니다. 강화되어서 공정성이 나아지고 방송이 계속 나아지면 좋은데 강하게 하는 것만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상파나 기존 사업자의 형평성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재허가나 재승인 시에는 전부 다 강화된 기준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오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강화되었을 때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의 입장도 보면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왜곡도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주 강화하는 것만이 문제일까, 이런 데 대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화된 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사실 나중에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따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위원장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감점의 배점 1점, 2점, 4점 하는 부분은 부위원장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규정을 고쳐서 가야 할 것이다, 이 시점부터 가야 할 부분은 아니고 규정을 고쳐서 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0% 미달했을 경우 ‘조건부 재승인’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넣자고 다시 제안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7>번 재승인 여부 결정 부분이 있습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재승인 거부를 해야 할 만큼 중편 중 어느 하나가 심사결과가 나뉘었다면 여기에 반드시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재승인 거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탈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탈락할 수 있습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0%에 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50%가 될 경우에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해 놓았을 경우 위의 40%와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 일관성을 가지게 하면서 위에 650점의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로 가고, 그다음에 과락의 경우 40%, 50%가 있는데 그것은 다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도 정리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오늘 사무국에서 정리해 온 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지상파 수준이라는 것, 지상파가 기준점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면 1페이지 처음에 보면 왜 재승인 심사를 하느냐, 콘텐츠 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재승인에 대한 문제를 심사하기 때문에 지상파가 기준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상파가 기준점이면 국민들이 익숙한 지상파 콘텐츠라는 눈높이에 국민들이 맞춰져 있으면 중편이나 보도PP도 지상파 수준의 콘텐츠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재승인 심사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지상파 콘텐츠 수준에 맞춰 주기 위해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상파에게 적용했던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맞춰 주기 위해 지상파보다 훨씬 떨어지는 콘텐츠 질을 보유하고 있는 중편이나 보도PP에게 그 지상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상파 수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높은 심사기준을 주어야 그 부분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맞춰질 것 아니냐는 부분에 있어서 지상파 기준점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구반에서 1회의 공청회와 1회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고양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중편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연구반이 조금 더 높은 심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무국에서 보고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서 연구반에서 이야

기했던 부분보다 다 낮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는 누구든지 어떤 관점에서 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배점을 말씀하셨는데 <3>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서 '13년 지상파 재허가 때는 75점이었는데 종편PP 재승인 때는 160점이다, 엄청나게 강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봅시다. 지상파가 기본적으로 장르 부분을 뛰어넘거나 그다음에 장르 부분에 있어서 규정을 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작계획에 있어서 지상파 3사가 평균 4,500~5,0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EBS가 600~7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계획의 적절성에 있어서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편의 장르 준수율이나, 종편이 도대체 종편인지 토론 전문채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장르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그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보다 2배 정도 높은,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높은 그러한 배점이 가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종편을 심사하는, 2013년 9월에 준비해서 2014년에 종편을 심사하려면 2013년 9월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강화했다고 자꾸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승인 이야기입니다. 조건부 재승인이 얼마나 허무한지 한 번 봅시다. TV조선, JTBC, 채널A 승인조건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 이후에 선정 당시의 승인조건인데 승인조건으로 9개가 있습니다. 다 의무였고, <6>번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이것이 승인조건 <6>번의 <가> 내용입니다. <나>는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라> 콘텐츠 제작자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마> 국내 방송장비,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이런 내용이 승인조건이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종편에서 지역방송 밀착 프로그램 만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담당 과장,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 이행실적 점검했지 않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점검했는데 구체적으로 밀착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담당 과장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승인조건 이행의 여부에 대해서도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조건부 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주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조건부 재승

인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 한 나라가 발각 뒤집힐 만큼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문제제기하고 그리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루를 늘려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우리 회의 끝나고 나서 언론들 하나 같이 '종편 심사 대폭 기준 완화', '후퇴' 이러한 여론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라는 그것도 '또는'인데 재승인 거부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들을 굳이 배제시켜야 하느냐고 했었을 때, 저는 합의제 위원회 구조에서 이 문제가 정파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공히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상임위원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라는 부분들을 단일안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는'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재승인'이 될 수 있고, 잘했다 하더라도 59점 또는 649점이면 '재승인 거부'가 의결될 수 있는 부분이면 이러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심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계획들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긴장감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추가로 홍 위원님 말씀하신 2가지 지적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첫째, 방통심의위원회의 제재점수가 1점, 2점, 4점 하는 것이 지상파와 연계되어 있고, 우리의 방송규칙과 통일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그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되, 그렇다면 지금 230점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에서 그것을 세분해 보면 140점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고, 70점 시청자 권익보호, 20점 신청법인의 적정성 그리고 관련 법령 위반사례 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점 중에 1점, 2점, 4점을 감점해도 본 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종편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공적책임을 묻는 140점 중에서 1점, 2점, 4점을 들어내더라도 또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심사위원단에게 실질적으로 방통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자율이 결정하고 또 방통위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제재를 결정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실효성 있게 재승인 때 반영하라는 것을 위원회가 하부기관인 심사위원회에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50% 미달 시 과락을 부여하는 문제도, 지상파의 기준이 금과옥조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지상파와 종편 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차이를 보면 지상파의 기준만 가지고 종편을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일반화의 오류가 아주 심각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입법 시에도 특가법도 있고 또 특정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것에서 보듯이 지금 종편이 그동안 저질러온 특수한 범법들을 보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50%라고 하는 평균적인 일반 과락 40점율을 벗어난 2항목 공적책임과 3항목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성을 우리가 부여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실효성이 있으려면 '조건부 재승인'이라고 하는 그런 숨방망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재승인 거부'까지 명기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상당히 숙달된 선수가 나와서 달리는 것과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방송내용의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마를 하는 사람에게 너 100m 13초에 뛰어라, 14초에 뛰어라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서 걸음마하는 수준이 급격하게 신장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저도 어저께 '계량평가 점수 배점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논의 끝에 그것도 조정하는데 동의했고 공공성 부분도 배점이 강화되는 것까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과락 점수를 40%에서 50%까지 올린 것도 그것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달리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편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재승인 거부'까지 붙이자는 것은 어저께 서로 논의한 정신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이 다시 나온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점이 굉장히 작아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수차례 방송정책을 접하면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미미한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저도 제시했었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점수를 강화하는 것은 별도의 장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중편 사안을 심사하면서 바로 올려서 그것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나 전체적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본다면 당초 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말씀을, 달리는 능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빨리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성인이나 유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장 쟁점이 붙고 있는 부분들이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라는 문제가 핵심 쟁점의 대표적인 배점 사례인데 이 부분은 달리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달리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똑바로 땔 것이냐, 옆으로 빠질 것이냐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오늘의 현안을 정확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40%에서 50%까지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상징적인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리하지 못하고 끝난 부분이 거부의 문제를 '또는'이라고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심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기본적인 긴장감들을 주어야 한다, 일반 언론에서 봐도 이것이 그냥 중편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성 기사가 쇄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편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의 역할로 '거부'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통 크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재 위원장

-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결론은 현재 배점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과락과 관련해서 50% 미만을 받았을 경우에 조건부 승인할 것이냐, 아예 거부까지 새로운 용어를 넣을 것이냐 그 문제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or, 혹은….

○ 이경재 위원장

- 우선 일반론적으로 제가 케이블TV를 시작할 때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지상파방송은 정말 국민의 전파를 활용하는, 거기에 '국민의 방송'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TV 시작할 때는 유료방송으로 특별히 이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규제를 지상파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았고 그런 면에서 지상파보다는 여러 가지 기준을 굉장히 약화시켜서 광고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기준도 케이블TV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중편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지탄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여러 차례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적인 바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반에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연구반에서 실어놓은 것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이 부분은 높여서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렸고, 또 정치권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처음의 안보다는 <2>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도 180점으로 올렸는데 230점으로 올렸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20점이 줄어든 것 같지만 지상파보다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락도 지상파가 40%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의 점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2>번, <3>번 항목에 관해서는 50%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강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거부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논의 같은데 이 부분은 거부해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거부도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두 표현을 넣더라도 심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은 있을지라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과 또는 '재승인 거부'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위원장으로서 넣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위원장님 뜻을 짐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위당이 중요합니다. 위당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 이경재 위원장

-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면 되지요?

○ 홍성규 상임위원

-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세요.

○ 이경재 위원장

-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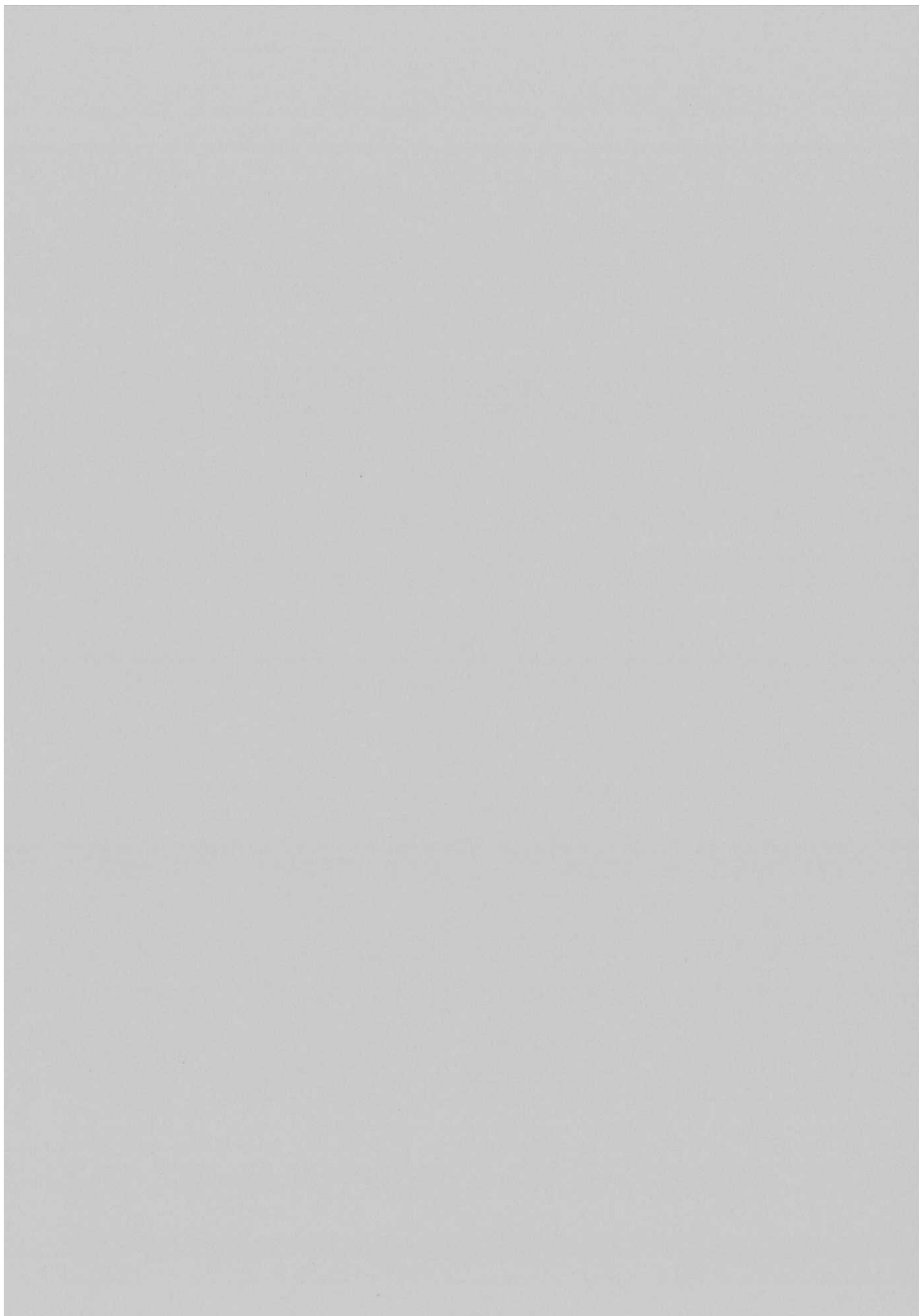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정도로 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렇게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끝.

Ⅲ. 재승인 신청 안내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원) PP 재승인 신청 안내

2013. 9.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재승인 계획(개요)	189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189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189
3. 재승인 여부 결정	190
4. 추진일정	190
5. 유의사항	191
II. 재승인 심사	192
1. 심사 기본 방향	191
2. 심사절차	193
3. 심사위원회 구성	194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195
III.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196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196
2. 작성 및 제출 요령	198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199
IV.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200

I. 재승인 개요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 유효기간이 '14년 상반기에 만료되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14.3.31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 : '13.9.30까지 제출
 - '14.4.21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 : '13.10.21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
- 제 출 처 :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문의 :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02-2110-1436, imagine27@kcc.go.kr)

-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으며,
 - 특히,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해당 심사사항 배점의 50%를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방송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 '13.9.30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14.3.31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 '13.10.21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14.4.21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 '13.10월~12월 신청서 검토, 서류보정, 시청자 의견접수 등
 -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견 수렴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 '14.1월~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2월 재승인 여부 의결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고지 예정

- 재승인과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Ⅱ. 재승인 심사

1 심사 기본 방향

가. 종편·보도PP 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

-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

* '10년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 ①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②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
 -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고려

-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함

-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 시청자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재승인 대상 방송사는 시청자 의견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시행
- 의견청취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청취 실시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심사위원장 포함 총 15인)

구분	전문분야	비고
심사위원 (15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3)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경영·회계 분야(3)	회계사,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단체(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o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절차) 및 제17조제3항(재승인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심사사항(종편/보도)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지 표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35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50	계 량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28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실적 및 계획)	140	180	비계량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70	80	비계량
	·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130)	· 기획·편성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70	60	비계량
	· 수급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50	35	비계량
	· 제작·협력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 재정적 능력	65	40	계량
	· 기술적 능력	15	1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60/60)	·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30	30	비계량
	·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20	비계량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4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실적 및 계획)	20	40	비계량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70)	·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0	70	비계량
9.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합 계		1000	1000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Ⅲ.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 · 제출요령

1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 등으로 구성

<재승인 신청 서류 현황>

1. 신청공문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 ① 재승인 신청서
 - ② 서약서
 - ③ 신청법인 명세
 -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⑤ 승인장 사본
 -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원본 보정 후 제출

□ 제출부수

< 제출부수 현황 >

구분	서류	원본	사본	CD	비고
최초 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2	1	
	3. 부속서류	1	1	1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2	-	-	파일 제출 (재무제표 등)
보정 후 재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18	2	
	3. 부속서류	1	18	2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	-	필요시 재제출
추후 통보시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1	18	2	

※ 보정 후 접수일은 추후 조정하여 통지

○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세부 제출 자료

○ 별도제출자료

- 2011년, 2012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 승인장은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로 변환, 수록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 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 재무제표는 한글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
-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8),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별도로 2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원본보정 후 별도 제출
- 첨부 재승인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

-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2013년 8월 31일, 계획은 2014년 4월 1일부터('14.4월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 다만,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 투자계획(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인력수급 계획의 경우 '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부속서류로 제출
- 신청서 접수 이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담당자 현황
 - 윤정은 사무관(02-2110-1433), 성재식 주무관(02-2110-1436)
- ※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사항은 상기 담당자에 문의

IV.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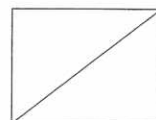
- ① 재승인 신청서
- ② 서약서
- ③ 신청법인 명세
-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⑤ 승인장 사본
-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재승인신청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원 본

2013. 9.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I. 재승인 신청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승인내용	승인번호		승인일자		
	소재지 (주된 사무소)	주소 : 전화 :	공급분야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 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건적	역무제공내용		수신자 불만처리	

「방송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100,000원
------	--	-----------------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 재승인신청서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작성

1. 신청인

※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2.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3.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각각의 항목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Ⅱ. 서약서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 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술한 사업계획 등이 국민과 방송통신 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승인을 받을 경우,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9월 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Ⅲ. 신청법인 명세

1 개요

※ 방송사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기술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승인장 교부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구분		세부 내역			
방송법인 명칭		국문			(약칭)
		영문			(약칭)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본금(단위:억원)	
구분	회사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임기
법인대표자					. . . ~ . . .
편성책임자					-
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이상 주요주주 현황		주주명	대표이사	참여지분(%)	회사자본금

1. 주주 현황

①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② 구성 주주간 특수 관계자 명	출자비중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③ 대기업 해당 여부 (0, ×)	④ 외국인 지분 총합 비율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0, ×)
				주 식 수	지 분 율	법인명 (성명)	대 표 자	국 적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총계												

※ 201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세부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

①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명을, 개인은 성명을 기재하며, 개인 주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

②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 :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당해 방송사업자의 구성주주 간 관계를 표시하되, 특수관계자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관계자 명을 기재

- 각 방송사업자는 5%이상 주주에게 <10. 기타 제출사항>의 '특수관계자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必)'를 작성토록 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5%이상 주주사가 특수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사에 '특수관계자 확인서'의 첨부1(주주현황)을 제공해야 함.

※ 5% 미만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③대기업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 "o"를 표기

④외국인지분비율(%) : 해당주주의 방송법제14조에 따른 외국인 지분 비율(%)을 기재

⑤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 란에 "o"를 표기

2. 주주 변동내역(승인장 교부시점~'13.8.31)

(단위 : 백만원)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 엑셀 파일로도 별도 제출

3.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변동 계획
주 주	
자본금	

※ 해당 사업자만 기재하며, 기업공개 계획 등을 포함

Ⅳ.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1.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1. 공적책임**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 수행실적 및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수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2. 공정성 구현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이행실적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의 공정성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공익성 구현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재난방송 및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재난방송 편성실적
- 방송언어 순화실적
-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캠페인 포함) 편성 실적

☐ 재난방송 편성 실적(양식)

< 재난방송 편성 현황 >									
구분	'11년			'12년			'13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재난방송	(%)	(%)	%	(%)	(%)	%	(%)	(%)	
전체 방송시간	(%)	(%)		(%)	(%)		(%)	(%)	

※ '13년 재난방송 편성실적은 8.31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재난방송 세부 편성 실적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 연도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

(단위 : 분, %)

구분 \ 연도	'11년			'12년			'13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적			-			%			

※ '13년 실적은 8.31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일시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11.11.11	더불어 삽시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야기	60	재방 2회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1.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소수시청자 그룹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권익실현 관련 이행실적
-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관련 이행실적
- 장애인 지원방안 관련 이행실적
-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관련 이행실적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편성실적(양식)

< 연도별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

(단위 : 분, %)

구분 \ 연도	'11년			'12년			'13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어린이·청소년			-			%			
장애인									
다문화가정·노약자· 외국인									
기타									
계									

※ '13년 실적은 8.31 기준으로 작성

< 소수 시청자 그룹 프로그램 세부 편성 내역 >

일시	구분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어린이· 청소년				재방 2회

※ 소수시청자 그룹별(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등) 세부 편성내역을 기재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양식)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화방송	(%)	(%)	%	(%)	(%)	%	(%)	(%)	
자막방송	(%)	(%)		(%)	(%)		(%)	(%)	
화면해설방송	(%)	(%)		(%)	(%)		(%)	(%)	
전체 방송시간	(%)	(%)		(%)	(%)		(%)	(%)	

※ '13년 실적은 8.31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어린이·청소년	(분 %)	(분 %)	(분 %)	(분 %)	(분 %)
장애인	(분 %)	(분 %)	(분 %)	(분 %)	(분 %)
다문화가정·노약자· 외국인	(분 %)	(분 %)	(분 %)	(분 %)	(분 %)
기타	(분 %)	(분 %)	(분 %)	(분 %)	(분 %)
전체방송시간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 장애인 방송 편성계획

분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막방송	시간(분)					
	비율(%)					
화면해설 방송	시간(분)					
	비율(%)					
수화방송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2. 시청자 참여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양식)

○ 운영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 요구) 반영 내역

순번	제안내용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제안시기	비고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요구) 중 미반영 내역

순번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내역	미반영 사유	비고

○ 시청자 위원 명단(연도별 작성)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단위 : 분, %)

2011년			2012년				2013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방송기간	프로그램 명	방송시간(분)	비고
'11.11.11 ~ '12. 9.30	시청자 세상	60	
'11.11.11 ~ '12. 10.7	시청자 평가	60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참여 관련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시청자 불만처리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연도별 자체심의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이행실적
- 자체심의 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이행실적

☐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양식)

(단위 : 건)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단위 : 건)

구분	사유 1	사유 2	사유 3	사유 4	사유 5	합계
2011년	건수					
	비율(%)					100%
2012년	건수					
	비율(%)					100%
2013년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단위 : 건)

구분	사유 1	사유 2	사유 3	사유 4	사유 5	합계
2011년	건수					
	비율(%)					100%
2012년	건수					
	비율(%)					100%
2013년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연도별 자체심의 현황(양식)

<20xx년>									
전체방송 프로그램 편수	심의현황			심의 미필 건수	심의시기			심의결과	
	대본심의 건수 (비율)	제작물 심의건수 (비율)	전체심의 건수		사전 심의 건수 (비율)	당일 심의 건수 (비율)	사후 심의 건수 (비율)	지적 건수	이행 건수

※ 자체 심의규정과 연도별 자체심의 세부 실적(심의실적,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등)은
부속서류로 제출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방송시간, 편성비율, 방송실적 등은 월간방송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1. 기획·편성의 우수성 및 독창성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의 당초 기본방향 및 목표와의 부합 여부
- 방송분야별, 장르별 편성 관련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양식)

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 ¹⁾	비율 ²⁾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보도												
교양												
오락												
총계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승인 신청시 제출한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이행실적 >

승인 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주요 제작계획 (프로그램명)	이행실적		비고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 전문편성 분야 방송실적(보도PP)

(단위 : 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1월	/		/		/	
2월	/		/		/	
⋮						
연간 합산	/		/		/	

※ '11년도 방송시간은 12월분만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o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향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분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간 ¹⁾	비율 ²⁾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보도										
교양										
오락										
총계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전문편성 분야 방송실적(보도PP)

(단위 : 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총 방송시간	/		/		/	

구분	2017년		2018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총 방송시간	/		/	

□ 주요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

편성일자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2. 편성의 자율성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o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o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2 수급 실적 및 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수급 실적(양식)

<20XX년>

구분		승인 시 사업계획			실적		
		시간 ¹⁾	비율	비용 ²⁾	시간	비율	비용
자체	순수자체제작 ³⁾						
	공동제작 ⁴⁾						
	소계						
외주제작 ⁵⁾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⁶⁾						
	국외물 구매 ⁷⁾						
	소계						
총계			100%			100%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시간 및 비용 합은 연간 시간 및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 ¹⁾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1) 제작원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13년 실적은 8. 31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2014년 ~ 2018년까지 연도별 제작 계획 >

구분		2014년			2015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16년			2017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18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이행실적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이행실적
-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
-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실적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계획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계획
- 신규 플랫폼 진출 계획
- 국내·외 콘텐츠 유통 계획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계획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 재무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3년 반기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재무비율	당기순손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별첨으로 제출, 엑셀파일 별도 제출
- 2011년, 2012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별도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에 작성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자료 작성기준을 근거로 최근 2년간(2011, 2012년)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작성

2. 수입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반기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행사 매출액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 수입금액의 총합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금액과 동일해야 함.

※ 수입현황 구분 기준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함

나. 방송 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 상기 항목별 세부 매출액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반기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 계			%			%			%		

※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예)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플랫폼 사업자별로 구분하고, 방송프로그램 판매는 국내·외 등으로 구분

3. 추정수입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광고 매출액		%		%	
협찬 매출액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행사 매출액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기타사업매출액		%		%	
총 계		%		%	

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 상기 항목별 세부 예상수입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
총 계		%		%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총 계					

1. 방송시설설치 운영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o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실적', '국산장비 도입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13년 실적은 8.31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 내역은 부속서류로 제출

□ 국산 방송장비 도입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13년 실적은 8.31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계획', '국산장비 도입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계획(아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국산장비 도입 계획(양식)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관련 이행실적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현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 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1. 향후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기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관련 이행실적
-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 계획 기본 전략 및 방향 관련
- 향후 5년간 시장전망
- 기업 내·외부 환경 분석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
-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계획

2.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및 향후전략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o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o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자금조달 및 운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
- 자금 조달계획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구분하여 자금운영 계획에 따른 추정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조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사업성 분석

- 향후 5년간('14~'18년)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추정 재무제표(아래 양식 참조)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추정근거 제시) 사업성을 분석
- 추정 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DCF 방법에 의한 순현재 가치(NPV), 내부 수익률(IRR),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고, 할인율 등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 명시

□ 추정재무제표(양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6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재무상태 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요약 손익계산 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비용					
	기타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기타 판관비					
재무 비율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엑셀 파일 별도 제출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교육훈련 실적 등을 중심으로 적성하며, '고용현황', '직원 교육투자 현황', '직원 교육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고용 현황(양식)

< 개요 >

구분	개국 시점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3.8.31)
정규직								
계약직								
계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 직급별 인력 고용 현황('13.8.31 현재) >

구분		임원	정규직						계약직						합계
								소계						소계	
인원	정원														
	현원														
인건비총액															
인건비평균															

※ 각 사업자별 내부 직급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 영수증 상의 연간급여총액(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기준

※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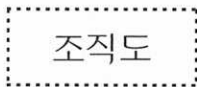
<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2013. 8.31. 현재) >

(단위 : 명)

구분	임원	방송직						관리 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홍보	기타	소계
		기자	PD	아나 운서	방송 기술	기타 방송	소계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소계												

※ 임원,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홍보, 기타 등으로 구분

※ 내부 조직도(2013.8.31. 기준)



※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를 작성

□ 직원 교육 투자 현황(양식)

(단위 : 백만원)

연도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내전문교육			%			%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 타										
합 계										

□ 직원 교육실적 세부내역(양식)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2.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o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교육훈련 계획 등을 중심으로 적성하며, '향후 인력 수급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향후 인력 수급계획(양식)

구분			'14년 말	'15년 말	'16년 말	'17년 말	'18년 말
정규직	신규						
	경력	자체					
		외부					
계약직							
계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

1.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현황'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계획의 이행실적
-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이행실적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구개발 총투자			%			%			%		

※ '13년 실적은 8.31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합 계				(%)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발전 기여 계획
- 방송장비 산업기여 및 연구개발(R&D) 계획
- 방송인력 양성계획

2.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o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o 향후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콘텐츠 산업 육성·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이행실적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향후 계획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관련 향후 계획

**6. 지역사회 발전기여 및 지역적·사회적·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실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기여실적

☐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실적(양식)

연도	일자 ¹⁾	지역 ²⁾	유형 ³⁾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액(백만원) ⁴⁾	비고
2011년							
소계							
2012년							
소계							
2013년							
소계							
합계							

※ ①지역적 ②사회적 ③문화적 기여실적은 아래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

- 1)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
- 2) 시 · 도(서울특별시는 제외)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양식)

< 개요 >

(단위 : 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방송시간)	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분)	
제작 실적		%		%		

< 세부내역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 <세부내역>의 방송시간 합과 <개요>의 방송시간은 동일해야 함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계획

7.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 아래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

가. 방송법 준수(위반사례 기술)

○

- 나. 주요주주 지분 승인장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 금지(상속·판결 등 방통위가 예외로 인정하여 주요주주 지분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도 기재)

○

- 다. 승인장 교부 후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납부했을 경우 납부 일자 명기)

○

- 라. 승인장 교부 이후 1년 이내 방송 개시(방송 일시 명기)

○

- 마. 사업계획서 성실히 이행 및 주요 내용 변경시 방통위 사전승인 취득

○

- 바. 사업계획 주요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매년 1월말까지)

○

- 사. 사업계획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영감시기구,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하며,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

아.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 10% 이상 편성(매년 1월말까지 이행실적 제출)

○

자.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아니할 것(뉴스Y)

○

차. 방통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시,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

○

8. 행정처분 현황

- ※ '13.8.31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 시정명령(불이행), 심의제재, 행정처분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용을 적시할 것

□ 시정명령(불이행) 현황(승인장 교부일 ~ 2013. 8. 31.)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비 고
시정명령				불이행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 불이행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
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심의제재 현황(승인장 교부일 ~ 2013. 8. 31.)

프로그램명	제재 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 고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0조제0항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받은 심의제재 현황을 양식대로 작성

□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 현황(승인장 교부일 ~ 2013. 8. 31.)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 고
과태료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공정거래법 등 타법 위반사례(승인장 교부일 ~ 2013. 8. 31.)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률 위반사례

※ (예시)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신청법인 최대주주의 방송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례(승인장 교부일 ~ 2013. 8. 31.)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 신청법인 최대주주 및 소속 임·직원의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사례

※ (예시)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9. 기타 제출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양식)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명시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등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제5장.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제6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	
제7장.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 3페이지 이내로 작성

특수관계자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주식회사oooo가 2014년 0월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주식회사oooo 주주(첨부1)가운데 본인과 방송법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주식수 (주)	지분율 (%)	
본 법인명					본 법인
총 계					

또한, 본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31일 기간 동안 주식회사oooo 주주(첨부1) 중 본인(법인)과 채무보증 관계에 있던 자의 명단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연월일(보증기간)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비 고

2013년 9월 일

주 주 명 :

대표자명 : (인)

첨부 : 1. 주주현황(2013.8.31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참고 >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방송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제4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3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8.2.22, 2010.1.26>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첨부1)

□ 주주현황

(2013.8.31 기준)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주식수(주)	지분율(%)
총계				100%

(첨부2) 인감증명서 1부

1. 대표자 변경 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표이사가 2인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말까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위원회 신고일자를 기재

3.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자성명 및 관계	비고
성 명 (대표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 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제출

4. 편성책임자 공표 현황

편성책임자	공표방법	공표일시	횟수(회)

1. 협찬 운영 방향

2. 협찬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반기
프로그램 제작 협찬	(%)	(%)	(%)
캠페인 협찬	(%)	(%)	(%)
행사 협찬	(%)	(%)	(%)
시상품 협찬	(%)	(%)	(%)
기타 협찬	(%)	(%)	(%)
협찬수입 총계	(%)	(%)	(%)
전체매출액			

1. 개요(승인장 교부일 ~ 2013.8.31)

2. 주요 내용

□ 관계회사 현황(2013.8.31. 기준)

(단위 : 천원)

법인명	관계 ¹⁾	주요사업	지분율 (%)	콘텐츠 등 거래금액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1) 신청 법인 기준으로 지배회사는 '지배', 종속회사는 '종속'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는 '계열'로 표기

1. 특수관계자 방송사 현황(2013.8.31기준)

특수관계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채널명)	유형	특수관계내용	관련 법령
		PP	계열회사	방송법시행령 3조1항0목0호
			30% 출자	
			30% 출자	
			계열회사	
			계열회사	

2.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2013.8.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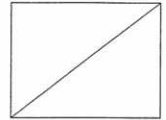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사업자명(채널명)	유형	출자금액 (단위:천원)	지분율 (%)
		지상파		

각종 수상 실적

V. 승인장 사본

Ⅵ. 주간기본편성표

- 재승인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주간기본편성표 제출
- 2013년 8월 31일 기준, A4 용지 규격



부속서류

원 본

2013. 9.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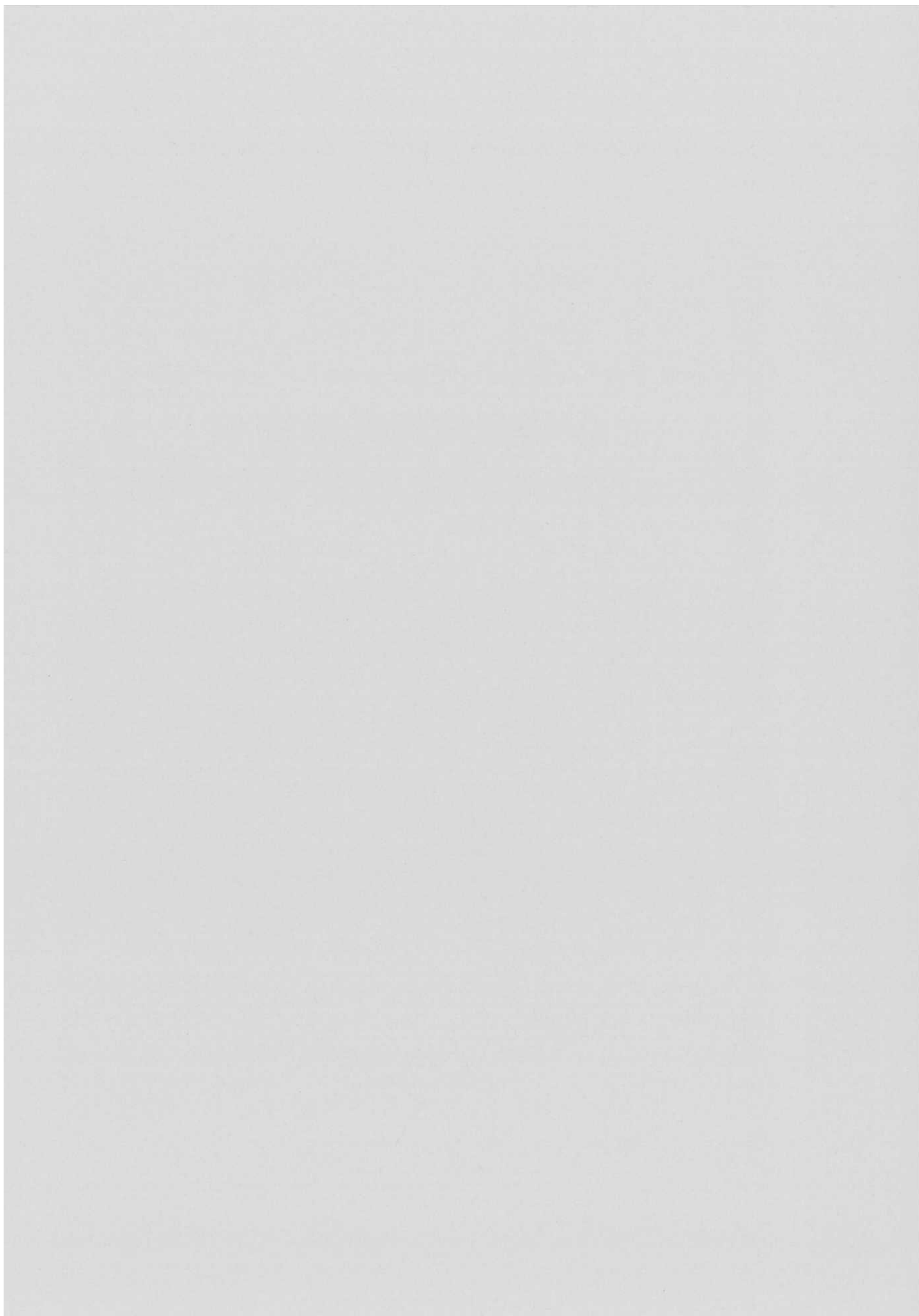
1. 법인등기부 등본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편성규약 전문
4. 자체심의 실적
5. 자체심의 규정
6. 재무상태표(2011,2012년)
7. 손익계산서(2011,2012년)
8. 기타

별도 제출 자료

1. 2011년·2012년 감사보고서 2부
2.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포함
3.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Ⅳ. 시청자 의견 청취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 접수 대상

- 2014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구분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종합편성	(주)조선방송	TV조선	오지철	2014년 3월 31일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2014년 3월 31일
	(주)채널에이	채널A	유재홍	2014년 4월 21일
보도전문	(주)연합뉴스티브이	뉴스Y	송현승	2014년 3월 31일

2. 의견 접수 기간

- 2013년 11월 29일(금) ~ 12월 30일(월)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TV 조선, JTBC, 채널A, 뉴스Y)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 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 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427-70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13.12.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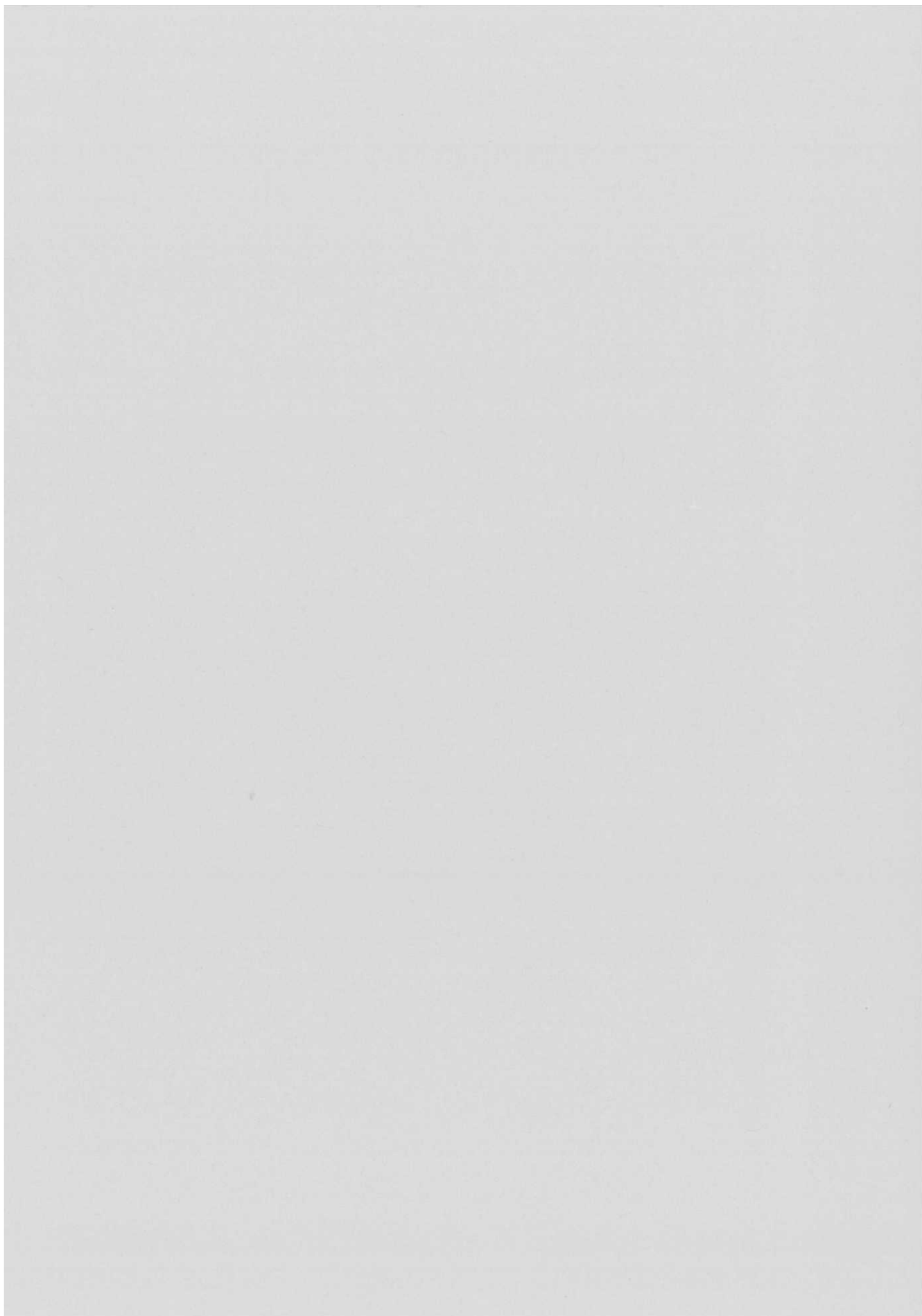
○ 팩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channel@kcc.go.kr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끝.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주)조선방송(TV조선)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1) 대표자 - 성명 : 오지철 (1949.12.30.) - 주요경력 : 문화관광부 차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2) 편성책임자 - 성명 : 윤석암(1963.04.12.) - 주요경력 : CJ tvN 대표이사 3) 자본금 : 납입자본금 3,100억 원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4) 주요주주 구성 - 최대주주 : (주)조선일보사 - 주요주주 : Too Capital,LLC, (주)대한항공, (주)부영주택, (주)삼흥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방송서비스 제공 -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팩트체커제> 운영 및 <공정보도 특별위원회>, <공정선거방송 특별위원회>운영 - 공익 캠페인 및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공익성 실현 <심의실> 등 시청자권익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청자 위원회 운영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2) 향후 5년간 계획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방송의 다양성 추구 - 현장성과 신속성을 살린 뉴스로 보도의 공정성 강화 - 시청자 맞춤형 뉴스포맷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참여 확대 노력 -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를 통한 공익성 실현 - 다채널 플랫폼을 통한 방송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 - 시청자 불만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강화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신개념 뉴스 <뉴스쇼 판>, 생활밀착형 인포테인먼트쇼 <만물상>, <닥터콘서트> 등 시청자 중심의 독창적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콘텐츠의 차별화 <외주제작 시행강령> 준수 및 <외주상생협의체> 운영 등 콘텐츠 산업의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함 2) 향후 5년간 계획 <시사현장>, <뉴스고발> 등 심층성, 현장성, 전문성을 살린 공정한 보도, 공익적 보도 실현

구분	주요 내용
	• <신문고>, <비법경매쇼 알토란> 등 유익한 정보와 품격있는 교양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시청자 중심의 방송 강화 • <오냐오냐>, <셰프와 이모> 등 건강한 웃음과 감동이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 편성 • 프로듀서 책임 및 권한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공정한 저작권 수익배분 및 제작비의 정상화 등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방안 구축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 재정적 능력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설립 이후, 무차입 기조 유지로 재무건전성 실현 • 현금성 자산 보유를 통한 우수한 재무적 융통성 확보 2) 향후 5년간 계획 • 2018년까지 평균 목표 매출액 성장률 21.95%(CAGR 21.95%) •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 및 다양한 편성을 통한 흑자 전환 (2018년) 및 안정적인 수익 실현 • 부채비율 20%(2018년) 이하의 튼튼한 재무 안정성 유지 2. 기술적 능력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광화문 센터(스튜디오, 부조정실 등) 구축 및 운영 •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익성 실현 2) 향후 5년간 계획 • 상암 제작센터(스튜디오, 부조정실 및 부속시설) 구축 검토 • 스마트 서비스 확대(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글로벌화, 장애인 보호 등) • 유지보수 및 시스템 고도화(업그레이드 및 노후 장비 교체)
제5장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 이행실적 • 평균 시청률 1% 돌파 등 유료방송시장에 성공적 진입 • 콘텐츠 해외유통 및 공동제작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과의 협력 강화 • 작고 효율적인 조직 유지 및 해외연수제도 및 직무 역량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 2) 향후 5년간 계획 • 콘텐츠 제작능력 강화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수위(首位)채널로 자리매김(일평균 시청률 2% 목표)

구분	주요 내용
	• 2017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흑자 전환 예상 • 2018년 매출액 1,659억원, 당기순이익 142억원 달성 • 프로그램 포맷 개발 등 단계적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 및 성과주의 시스템의 정착 • 연 매출액의 최소 3% 이상 지속적인 교육투자 • TV조선 상시교육훈련시스템(CHOCEES, 코시스) 운영과 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 구성 • 사회적 기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경영체제 지속
제6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 국산 방송장비 적극 활용(전체 투자비 중 26.7%) 및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한 방송기술 실무에 활용 • SO와 뉴스 공동제작, PP와 프로그램 교류 등 관련 사업자와 상생 협력 • 콘텐츠 투자조합 결성(420억원 규모) 및 방송발전을 위한 출연금(100억원) 납부 완료 2)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유관산업 활성화(UDTV관련 장비투자, HD장비 고도화, 상암제작센터 구축 등) • 방송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방송분야 저변 확대(인턴십 제도 운영, UCC 영상공모전 개최 등) • 사업자간 협력을 통한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디지털 전환 촉진 공동캠페인 개최 등)
제7장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 사회환원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 콘텐츠의 펀드 운영 및 문화행사 주치를 통한 콘텐츠 투자 •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및 보도를 통한 지역문화 홍보 2) 향후 5년간 계획 •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의제설정 역할 강화 • 국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문화콘텐츠 투자 •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지역행사의 방송콘텐츠화

□ (주)제이티비씨(JTBC)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명칭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영문명 : JTBC Co. Ltd.) • 납입 자본금 4,220억원 • 대표자 - 홍석현 대표이사(1949년 10월 20일 생) - 김수길 대표이사(1954년 7월 5일 생) • 편성책임자: 김영신 상무(1955년 3월 25일 생) • 주주구성 : (유)중앙미디어네트워크 등 126개사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1. 방송의 공적책임 • 종합편성채널다운 보도 · 교양 · 오락 프로그램 균형적 편성 • 종합편성채널로서 전 연령대가 모두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 편성 - 가족 드라마 편성으로 건전한 가정생활 조성에 기여 <발효가족>, <청담동 살아요>, <해피엔딩>, <무자식 상팔자>, <더 이상은 못 참아> 등 -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 편성 <하나되는 대한민국>, <패티김쇼>, <유자식 상팔자>, <썰전>, <8020 이어령 학당>, <시대기획 동행>, <고부 스캔들> 등 - <JTBC NEWS9>, <대통령의 자격>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 공약 검증, 종합편성채널 중 가장 공정한 선거방송 실시 • 소수계층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편성 <휴먼다큐>, <동시다큐 2스토리>, <8020 이어령학당>, <힘있는 이야기쇼>, <쇼강70약>, <JTBC프리암>, <리얼리티카메라 오감도>, <라이프다큐 스타일> 등 • 유료방송 가입자 100% 송출, 웹(WEB) · 앱(APP) 서비스로 방송서비스 접근의 보편성 및 매체접근권 강화 • 장애인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 완료 및 2013년부터 수화 통역방송 · 자막방송 · 화면해설방송 실시 • 공적책임 수행 전담 기구 통합사회공헌센터 2013년 6월 발족 • 방송 인재 육성 위한 '융합미디어아카데미' 2013년 6월 설립 • 보도 · 시사 · 토론 프로그램 및 어린이 방송에 중간광고 편성 금지 • 방송 프라임타임대 공익광고 편성으로 방송의 공익성 강화 2. 방송의 공정성 구현 • 사실 · 공정 · 균형 · 품위 4대 원칙 준수로 공정방송 실현 노력 • 국내 최초 인사권과 보도 편집권을 갖는 보도담당 사장이 뉴스 진행으로 뉴스의 신뢰도와 공정성 강화 • 뉴스품질지수 개발 및 활용으로 JTBC 뉴스의 품질 제고 • 3단계 팩트 확인 시스템 준수 • 보수 · 진보 인사 균형 섭외로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 - 시사토크 프로그램 출연자 234명 중 보수 38%, 진보 33%, 중립 12%, 기타 17% 섭외

구 분	주 요 내 용
	• 편파 방송 없었던 JTBC 선거보도, 심의 제재 벌점 최저 - JTBC 1점 < A사 2점 < B사 4점 < C사 14점 • 선거방송 자문단, 정책·공약 검증 전담팀 운영으로 공정한 선거방송 제작 • 선거방송 백서 <2012 선택 우리들의 대통령> 발간 • 팩트체커, 법률 자문단, 의료 자문단 운영으로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 노력 • 사외 인사를 포함한 JTBC 공정정보위원회 운영으로 보도 공정성 확보 3. 방송의 공익성 실현 • 방통위의 재난신호 자동 수신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상황 자막서비스 실시 • JTBC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제작 및 활용으로 방송언어 순화 노력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방송 공익성 실현 - 2011년 12.38%, 2012년 17.24%, 2013년 15.15% - 2014년부터 20% 이상 편성 및 2018년 30%까지 단계적 확대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2013년 5.8% 편성, 2018년까지 7.6%로 단계적 확대 • 소수계층 프로그램 2013년 6.6% 편성, 2018년까지 7.6%로 단계적 확대 •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통위 고시비율 초과 이행, 사업계획 대비 200% 이상 높게 편성 실시 • JTBC 홈페이지 장애인 보조방송 서비스 및 VOD 자막서비스로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 계획 4. 시청자 권익 보호 • 2013년 9월 J Council 구성(15명), 2017년까지 100명 증원으로 시청자 참여 강화 •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위원 선임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의회'를 시청자 시청이 용이한 시간대 편성 • 시민단체의 시청자평가원 패널 참여로 패널 다양성 확보해 여론 다양성 수용 예정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1. 기획·편성의 우수성 및 독창성 • 보도·교양·오락의 균형적 편성 실시로 다양성 지수 종합편성채널 1위 - 2011년: 보도 20.0%, 교양 40.1%, 오락 39.9% - 2012년: 보도 20.2%, 교양 38.2%, 오락 41.6% - 2013년: 보도 13.1%, 교양 42.9%, 오락 43.9%(2013년은 8월 31일까지) • 재방비율 2012년 58.8%로 높지만 2016년 39.9% 2018년 35.0%까지 단계적 축소 예정 • <마녀사냥>, <히든싱어>, <상류사회> 등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제작 • <탐사코드J>, <뉴스맨> 등 한 걸음 더들어가는 심층탐사 보도 제작 • 평일 22시 예능·교양으로 새로운 시청 패턴을 창조하는 창의 편성 실시 •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0위에 <썰전> 선정 • 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전, 2013 WBC, 2013 동아시아컵 등 종합편성채널 중 유일하게 대형 스포츠 중계 • 창의성 발현시스템 콜럼버스 플랜 운영 2. 프로그램 수급 • 국내제작 비율 2013년 상반기 98.7%(승인기준 60% 이상)

구 분	주요 내용
	• 외주제작 비율 2013년 상반기 52.6%/ 주시청시간 16.3% (승인기준 전체 35% 이상/ 주시청시간 10%) • 콘텐츠 투자금액 2012년 1,129억원으로 종합편성채널 1위 • 종합편성채널 중 유일하게 개국 이후 꾸준한 드라마 제작 편성(18개 459편) • 앵커-현장 취재기자-전문가를 동시에 출연시키는 3원 라이브 강화 3. 제작 협력 실적 및 계획 • 외주제작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기여 • 개국 이후 <무자식 상팔자> 등 드라마 총 18개 549편 제작 협력 • <히든싱어>, <마녀사냥> 등 예능 프로그램 총 16개 294편 제작 협력 • <닥터의수부>, <고부스캔들> 등 교양 프로그램 총 60개 858편 제작 협력 • 외주제작비 지급 선진 시스템(선지급, Cost Plus) 도입 및 운영 • 외주제작사 인센티브제도 운영 • JTBC 콘텐츠 국내 유통 실적 99억원으로 콘텐츠 지상파 독과점 완화 기여 • JTBC 콘텐츠 해외 유통(160억원)으로 글로벌 미디어 회사 기틀 마련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미래를 위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 실시 • 종합편성채널 4사 중 자본금 1위, 4,220억원 • 종합편성채널 중 최대인 460억원 규모의 방송장비 투자 완료 • 종합편성채널 최대 규모인 프로그램 제작 스튜디오 8개 확보 • 삼양동 DMCC 스튜디오 준공('13.3.25) • 종합편성채널 중 유일한 공개홀 구축으로 시청자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
제5장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전문성은 강화, 투명성 확보 • 책임경영 강화형 조직 구조 운영: 4개 총괄 - 2개 실 - 2개 센터 • 보도담당 사장제 도입으로 방송 공정성, 독립성, 내적 책무성 강화 • 1000명 이상 직·간접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직접 470명, 간접 680명) • 콘텐츠 유통 전담 법인 설립으로 국내외 콘텐츠 판매 강화 • 매출액 : 2011년 83억원, 2012년 642억원 • 당기순손익: 2011년 -276억원, 2012년 -1,326억원
제6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 방송시설 510종 중 국산장비 162개 구매로 32% 국산화 실시 •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연구 개발 실행 - UHD, 융합형 플랫폼, 장애인 시청 접근권 강화 기술 연구 노력 • JTBC 컬리지 프로그램(상시 인턴십), 융합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으로 방송 인력 양성 노력 •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외주제작사 및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 JTBC 콘텐츠 유통으로 지상파 방송 콘텐츠 독과점 완화 기여 • VOD(다시보기), FOD(무료 다시보기) 공급으로 유료방송 활성화 및 시청자 만족도 제고 • 고품질 HD 콘텐츠 100% 제공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기여 • 모바일 플랫폼에 JTBC 공급을 통해 융합기술 발전 기여 • 4개 저작권 관련 협회와의 협약 체결로 방송종사자 처우 개선 기여

구 분	주요 내용
제7장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 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	•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통합사회공헌센터 설립 및 운영 강화 노력 - 위스타트운동 후원, 위아자 나눔장터,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주최 등 • 골든디스크 시상식, 더뮤지컬어워즈, 백상예술대상 등 문화 행사 주최 • 국가대표 축구경기, 2013 WBC 중계 등을 통해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 • 1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역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활동 실시 - 총 1,279명 JTBC 견학 • 주철환 대PD의 지역 대학생 및 지역 대상 강연 실시 • 지역 주재기자·지역 SO의 뉴스 제작·리포팅 교육 실시 • 지역 대상 JTBC 단독 문화행사 개최 - <JTBC Special 수원 한여름밤 음악회>, <평택 고덕콘서트>

□ (주)채널에이(채널A)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신청법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대 표 자: 김재호, 유재홍 편성책임자: 송미경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행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가. 공적책임 - 채널A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 경제에 대한 존중’이라는 방송이념과 함께 ‘열린 방송’ ‘따뜻한 방송’ ‘올바른 방송’ ‘착한 방송’이라는 4대 비전을 정하고 방송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뉴스에서는 인사 검증 보도로 2013년 1월 종합편성채널 최초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으며 그 밖에도 수많은 특종보도를 통해 언론의 공적인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대한민국 미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핵심 어젠다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 공정성 - 채널A는 방송의 공정성 준수를 위해 내부에 공정정보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정보도 교육, 공정정보도 에디터 회의 등을 통해 공정성 유지에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방송 준칙을 제정하고 내부에 공정선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채널A는 향후 심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정보도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정성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익성 - 채널A는 공익 다큐멘터리와 기획보도를 다수 방영하는 등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및 재난예방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방송언어 순화 지침서를 발간하며 언어 순화에도 힘썼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공익 프로그램을 중점 편성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시청자 권익보호 - 채널A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행복센터,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모니터단 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실현해 왔습니다. 장애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수 방영했습니다. - 채널A는 향후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시청자의 목소리를 방송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가.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 - 채널A는 개국 이후 정부의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KI)’ 조사에서 2012년 1월 이후 6분기 연속 종합편성채널(중편)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식 문화의

구 분	주요 내용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등 공익성과 재미를 겸비한 프로그램도 다수 방영했습니다. - 채널A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종편 중 최다 수상(3회)했습니다. 총 수상실적도 11건으로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공익성과 흥미를 두루 갖춘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양 프로그램 편성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 공모를 통해 참신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한편 시청자 참여형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해 시청자와의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나. 공급실적 및 계획 - 채널A는 지상파 방송사보다 월등히 높은 외주제작비 비율을 유지하며 외부 창작 집단을 육성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하면서도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사를 비롯한 외부 제작주체의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선진적이며 건전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열린&착한 아웃소싱’을 통한 ‘기획 중심의 개방형 방송사 모델’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기존 포맷과는 차별화된 혁신적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 제작 협력 실적 및 계획 - 채널A는 안정적인 프로그램 공급과 외주 제작사 자생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하며 제작사와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외주 제작사와 함께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열린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방송 인력을 양성하고 ‘N스크린’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해외 미디어 기업과의 협력과 콘텐츠 수출 확대를 통해 한류 확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가. 재정적 능력 - 채널A는 설립 이후 광고, 협찬, 온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대규모 시설 및 콘텐츠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 양방향 광고, 온라인 방송 등 뉴미디어 분야에서 매출을 확대해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영의 건전성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나. 기술적 능력 - 채널A는 국내 최초로 100% 네트워크 기반 제작시스템(NPS)을 구축하는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진적인 제작 및 송출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산 장비도 대거 활용했습니다. - 채널A는 2014년 상암동에 국내 최고수준의 설비를 갖춘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곳에서 UHD 제작환경 구축 등 첨단 방송 시스템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제5장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	가. 사업추진계획 - 채널A는 2011년 개국 직후부터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모든 유료 방송을 통해 전국 2700만 가구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고, 크로스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광고시장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채널A는 앞으로 사업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해 유료방송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나. 조직 및 인력 운영 - 채널A는 대규모 경력·신입 공채와 전문인력 특채, 내부인력 공모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했습니다. 채널A는 앞으로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고 내부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 채널A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력 및 기술·시스템 운용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6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 채널A는 내부 미디어 기술연구소를 활용해 다양한 외부 주체들과 연구개발(R&D)을 진행하며 국내 방송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채널A는 영화 <설국열차>, <미스터고>, 한류 아이돌 해외콘서트,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 등에 투자해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한류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 채널A는 시민기자인 스마트리포터, 언론사 최초 신문-방송 융합형 인터넷도를 운영하며 방송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인 대상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장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 채널A는 방송사의 사회책임(CSR) 경영에 앞장서기 위해 공익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학술 세미나 등 공익행사를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함께 전국 20곳에 청년드림센터를 운영하며 청년 구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보전, 생활체육 진흥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채널A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해 왔으며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 등을 활용한 지역 밀착 콘텐츠를 제작해 방영하고 있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공익 프로그램 강화, 나눔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뉴스Y)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명칭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채널명 : 뉴스Y) ○ 대표자 : 송현승/ 편성책임자 : 이래운 ○ 주주 : (주)연합뉴스 28%, 을지학원 9.9%, (주)화성개발 8.3%, (주)예술저축은행 7.4%(5%이상 주요주주 합 53.6%, 기타주주 46.4%)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 뉴스Y는 개국 이후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방송심의 제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으며, 미디어미래연구소의 2012년 12월 제6회 미디어 어워드에서 <공정한 미디어>부문에서 8대 미디어로 선정 ○ 방송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적 행사, 기념식, 선거방송, 공익광고·캠페인 등 공익적 프로그램 지속 편성 ○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현장 라이브 중계 확대, 편향 없는 객관적 심층보도를 통한 공정한 뉴스제작 ○ 연합뉴스의 전국 13개 각 지역취재본부에서 취재·제작하는 지역특화 뉴스 '지방시대' 매일 제작·편성(주5회). 남북 분단의 현실을 조망하고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북한 전문 뉴스 '북한은 오늘' 매일 2회 제작·편성 ○ 외국인을 위한 영어 전문 뉴스 'English Y', 국제뉴스 '글로벌 Y', '월드 클립' 등 글로벌 프로그램 편성. 국내 다문화 가정을 다룬 '무지개Y', 휴먼다큐 '사람들', 연중기획 다문화 공동프로젝트 '하모니' 등 편성 ○ 뉴스Y는 개국과 동시에 방송사 최대 규모인 총 13대의 'TVU 백팩'을 도입해 영상 뉴스 속보 강화, 생중계 등 영상뉴스 발전에 기여 ○ 각종 재해·재난 사고 발생 시 재난방송 비상편성 체제 항시 유지하고 있으며 방송사 최초로 '기상예보사(자체 예보 생산 가능)' 도입 ○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시청권을 위한 장애인 자막방송, 수화통역방송 시행. 특히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포함 PP사 중 최초로 수화통역사 비율 확대시행 ○ 국내 유일하게 전 세계 1위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유스트림'에 실시간 방송 서비스 론칭. 약 120여 개국 전 세계 인구가 시청 중. ○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규약에 의거 시청자위원장과 내부인사인 보도국장 등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운영 ○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심의회에 관한 규정, 뉴스Y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강화 ○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옴부즈맨Y'를 편성해 시청자 참여를 늘리는 등 시청자 주권을 확대시킴 ○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의 다양성 구현에 기여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제작. 해외 뉴스채널, 해외동포 채널 등과 콘텐츠 교류 및 확대할 예정 ○ 방송의 공적 책임과 보편성을 위한 공익적 보도 프로그램 지속 편성, 제작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수 계층 시청권 보장, 장애인 시청권 보장 확대, 사회적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

구 분	주요 내용
	○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해 보도 공정성 강화, 편성규약에 의거 편성위원회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운영, 시청자위원회 매월 1회 회의 개최 ○ 시청자 모니터링단, 대학 방송국과의 협약을 통해 대학생 기자단 운영 예정 ○ 자동자막송출시스템 재난방송 실시, 재난방송 사전예방 프로그램 편성 확대
제3장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 뉴스Y는 신뢰받는 방송, 차별화된 방송,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글로벌뉴스채널을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지향 ○ 프로그램 편성 시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을 위해 방통위에서 고시하는 편성비율 준수. 하루 평균 20시간 뉴스 편성으로 보도전문 채널다운 편성 구현. 뉴스는 평균 89.4%, 시사·교양은 평균 10.6% 편성 ○ 뉴스 외 불편성 프로그램 중 35%를 외주 제작하고 있으며 불편성 프로그램 중 55%를 국내외 우수프로그램을 구매·편성하고 있음 ○ 해외 특파원 현지 밀착형 ‘글로벌뉴스’, 남북 분단의 현실을 조망하고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북한뉴스’, 지역취재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방뉴스’, 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시청자의 주권보장을 위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송의 공적책임을 위한 공익성 프로그램 등 주로 편성 ○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과 보도국장 등 8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운영 ○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및 ‘방송용역 제작비 및 외주제작에 관한 규정’ 제정하고 외주제작사 선정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체 구매심의위원회를 가동 ○ 국내 방송사 외에도 미주 한인방송에 뉴스Y 보도영상 공급을 통해 한인방송 지원 및 해외 동포에 대한 정보 욕구 충족 ○ 국내외 우수 다큐멘터리 구매를 통한 시사교양 비율 점진적 확대 예정 ○ 정보성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확대를 통한 정보 프로그램 강화 ○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심층 대담 프로그램의 제작 확대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계획.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외주제작사 선정 유지 ○ 연합뉴스 해외취재망을 통해 AP·로이터·블룸버그 등 대상으로 한국 관련 영상뉴스를 유통시킬 예정. 또 콘텐츠 확보해 제작물에 적극 활용할 계획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스튜디오 등 제작시설 870㎡규모, 주조정실 등 송출시설 124㎡의 규모. 건물 2층의 2스튜디오는 면적 157㎡의 규모이며 VR을 활용한 가상스튜디오, 5층 보도국내에 위치한 5스튜디오는 115㎡규모의 오픈스튜디오임 ○ '11년 전체 236억4천만원 투자 중 국산 장비 비율은 49억4천만원으로 약 20.9%의 국산화 비율을 계획함. '11년 방송시설에 약 197억을 투자. 이중 국산 장비 비율은 19.8%로 계획 거의 달성 ○ 올 10월 이전하는 신사옥은 방송시설 설치를 위한 조건들을 건물 설계

구 분	주요 내용
	단계부터 고려, 방송환경에 최적화 한 건물. 상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 경로 확보,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기준을 만족하는 접지 설계, 내진 설계 적용 ○ '14년부터 '18년까지 약 85억을 방송시설에 투자할 예정. 장비 및 시스템 도입 시 우수한 국산장비와 국산솔루션을 우선 선택할 예정. 개국초기와 같이 약 20%수준의 국산장비 비율을 계속 유지할 계획 ○ 방송기술 및 편집기술 인력은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경력자 확보. 방송시설 운용인력 또한 관련 업무 경력자로 확보 ○ 뉴스Y는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현을 위해 트리맵 솔루션, 기상방송 송출 솔루션, 자막 및 그래픽 송출 솔루션을 개발. 향후 멀티터치 모니터개발, 실시간 그래픽 수화번역 시스템, 스마트 미디어 기술, VR/AR 시스템 외부 데이터 연동 시스템 등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총 16억을 투자할 예정 ○ 뉴스Y는 초기사업자로서 조달자금보다 소요자금이 커 현재 적자수익 구조(2012년 기준 매출액 29,602백만원, 당기순이익 -17,045백만원)임. 그러나 2016년부터 사업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흑자구조 전환을 계획함
제5장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계획	○ 모든 플랫폼(SO, IPTV 등) 등과 송출 계약 완료하였고 구체적 교류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 브랜드 강화를 위한 채널 번호 23번 전략 실행 ○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알-자지라와 영상교류 협약 체결. 또 러시아 투데이, KBF-D-TV, TVBS 등과 교류협력 MOU 체결 ○ 연합뉴스가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AP·로이터·블룸버그 등에 한국 관련 영상뉴스의 글로벌 유통. 연합뉴스 특파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확보 및 제공 ○ 인력 운용 효율성, 보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합 뉴스와 협업을 통해 텍스트 뉴스와 영상뉴스의 유기적 결합 추진 ○ 뉴스Y 조직은 433명으로 보도, 제작, 기술, 경영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60% 이상이 콘텐츠 제작 중심인력 ○ 뉴스Y는 '13년 8월말까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초과하여 인력을 고용. '13년 8월 31일기준 총 433명으로 당초 사업계획 224명 대비 193% 초과 달성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현재 뉴스Y는 파견직 사원 중 성과 우수자에 한해 매년 일정 인원내 대하여 정규직 전환 ○ 인사평가를 통한 성과주의 실시, 국내외 전문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 하고, 포상을 통해 격려 및 동기를 부여해 지속적인 회사의 발전을 도모. ○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뒤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 외부감사인을 통해 2013년 중간감사를 진행 ○ '15년까지는 사업초기로 조달자금보다 소요자금이 많지만, '16년부터는 사업안정기에 접어들어 조달자금보다 소요자금보다 클 것으로 예상
제6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 산학협력을 통해 방송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연2회 인턴십 실시. ○ 방송국 견학을 희망하는 국내·외 방송관련자 및 학생 등에게 2012년 약 40여명, 2013년 약 100여명 견학 및 현장체험 기회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국제문화창의산업전, 언론학회·방송학회 학술대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행사 등 각종 방송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 및 후원. ○ 뉴스Y는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현을 위해 트리맵솔루션, 기상방송 송출 솔루션, 자막 및 그래픽 송출 솔루션을 개발 ○ 서울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KTX, 공항철도 등에 뉴스Y를 방영 중. 정부기관, 공항·역사 등 연합뉴스 멀티미디어 단말기(DID)에 영상 뉴스 제공 ○ 멀티터치 모니터개발, 실시간 그래픽 수화번역 시스템, 연합뉴스 미디어랩과 공동연구, 영상 아카이브, VR/AR 시스템 외부 데이터 연동 시스템, 장애인 자막 송출 시스템, 스마트 미디어 기술 등 향후 5년간 약 16억원 투자 예정 ○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 유치에 효과적인 HD급 화질의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협력. Tving 및 에브리온TV 등에 콘텐츠를 제공해 SO의 수익 실현에 기여. 티브로드, 적십자사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공동제작, 편성 ○ KT·SK 등 IPTV 3사에 N스크린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상파DMB 플랫폼인 한국DMB(주)와 위성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뉴스Y 송출. 국회방송, 국군방송, KTV와 콘텐츠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전반적인 프로그램 교류 ○ 미주 한인방송 대상(BONG TV, Y-TV, KEMS-TV, MK-TV 등)에 뉴스Y 보도영상 공급을 통해 한인방송 지원 및 해외 동포에 대한 정보 욕구 충족 ○ 방송인력 양성을 위해 인턴십 기회와 산학협력 기회 제공의 확대하고 직원 교육훈련비 투자와 직원 교육시간을 증대
제7장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 전국 17개 케이블TV 단일 SO와 방송교류업무 협약 체결해 선거방송 영상, 태풍 등 재난재해 영상 방송영상을 교류 ○ 티브로드, 대한적십자와 함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편성해 지역방송에서 방영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나눔행사 실시 ○ '디지털케이블TV 쇼(KCTA)' 행사 주요 협찬사로 참가('12년, '13년) ○ 2012년 12월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 초청 음악회 개최 ○ 2013년 6월 다문화, 북한이탈청소년 지원단체인 (사)사랑정원 후원 ○ 연합뉴스,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와 공동으로 2013.2.5 '동북아 미래를 본다' 동북아심포지엄 개최. 사회적 화합을 위해 전국다문화가정배드민턴 대회를 개최 ○ 문화보전 및 발전을 위한 내용을 심층 보도하고, 문화계 관련 프로그램 '컬쳐Y', '만화를 말하다', '여행과 풍경', '아웃도어 내비게이션' 등 편성. ○ 사회공헌단체와의 MOU를 통한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청소년 등 지원 추진 ○ 매년 '뉴스Y경제포럼' 주최를 통해 경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예정 ○ '지방시대' 등 지역발전 기여 프로그램 제작·편성 계획 ○ 정규직 전환, 인턴십, 외주제작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